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A Study on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Daejeon Regional Construction Industry

김 기 희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서 문

건설업은 지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며, 제조업 등 다른 관련 산업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반사업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 지속과 함께 지역의 일반건설 및 주택경기도 침체되면서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투자의 혜택이 지역건설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역건설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 지역건설업의 통계적 현황 분석, 지역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정책적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관련 개선방안과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해 준 연구자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와 건설협회,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를 하여 주신 건설업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병 로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업은 지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며, 제조업 등 다른 관련 산업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반사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향후 조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광역경제권사업 추진, 구도심 재생사업 등 예정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고려할 때, 대전지역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 지속과 함께 지역의 일반건설 및 주택경기도 침체되면서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투자의 혜택이 지역건설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연구목적

-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역건설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 지역건설업의 통계적 현황 분석, 지역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정책적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관련 개선방안과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및 추이

□ 건설업과 지역경제

- 건설시장의 확대 또는 건설투자의 증대는 지역내총생산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큼
- 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역할과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해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증대하는 역할

□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건설투자 비중은 2007년 현재 각각 7.4%, 16.1%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임.
-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기여율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기를 제외하고는 음(-)의 기여율, 2005년 이후 더욱 확대.
- 건설업의 입지계수는 1995년 1.34에서 2007년 0.88로 산업특화도가 하락, 건설업의 고용흡수력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 대전지역 건설업체수는 2008년 현재 종합건설업 199개, 전문건설업 808개로 전국의 2% 수준이며 200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
-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비중은 건설업 전체의 79.7%(2007년)로 전국평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편.

■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

- 대전지역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

□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 현재 경영상태는 종합건설업은 5년전과 1년 전보다 개선되었고 전문건설업은 악화되었으며,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5년전보다 1년전인 최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음
-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모두 경영상태는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 중점사업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의 이유로 모두 낙관적으로 전망.
- 그러나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 난망의 이유로 건설경기는 부정적으로 예상.
-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공사물량의 부족, 극복과제로는 영업력의 강화.

□ 관련 정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수주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직접시공의무제도,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BTL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
- 입찰관련 제도들과 관련해서, 적격심사제도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존속해야 한다고 평가, 등급별입찰제도는 절반정도의 건설업체가 이전에 비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 정도는 그 취지는 좋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최저가낙찰제도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 하도급과 관련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추가 공사비 미반영,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등의 불만사항을 갖고 있음.
- 지역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고,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
 - 이러한 양극화는 상생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정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보통이라 응답.
 - 그러나, 종합건설업은 잘된다는 편, 전문건설업은 잘 안된다는 편이 많았음.

- 상생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로는 종합건설업은 건설업체의 인식부족을 들었고, 전문건설업에는 관련제도의 미비와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인식부족을 지적함.
- 실제로 대전지역내 대형 종합건설업체는 많지 않음. 지역업체들이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등에 대한 참여율은 30%에 불과하고 70%는 외부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 그만큼 지역업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형건설사와의 상생협력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대형공사에서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관련제도의 개선 :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수주, 입찰계약, 하도급 관련 등 3개 분야에 걸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수주관련 제도의 개선

- 수주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극 활용,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실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등이 절실히 요구됨.

- ① **지방계약법의 적극 활용방안**으로서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발주물량의 확대,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해 많은 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지방계약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수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응답.

- ②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 당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의무화를 통해 수주 제고에 기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실시**가 필요함.
 - 금액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비율을 50%이상 확보하며, 지역내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사업의 경우는 향후 공사금액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③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물량을 근간으로 물량을 확대(종합건설업)해야 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전문건설업)해야 함.
 - 물량 확대방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며, 정부의 BTL 발주물량은 축소해야 함.
 -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2009년 하반기부터 입찰공고일 90일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참여를 허용토록 강화하였으므로 지역업체들의 물량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④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파트너링 공사방식)의 활성화**가 절실함.
 - 방안으로는 종합과 전문건설사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하는 구성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계약이행, 시공책임, 하자보수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

□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 입찰계약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PQ심사제도의 개선, 적격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낙찰률 유지, 등급별 입찰제도의 보완,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분할 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함.
- ① PQ심사제도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
 - 조정방안으로 하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배점기준간 참수차이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대표자 및 구성원의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 ② 적격심사제도의 취지 -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성실시공을 도모함 - 에 부합하는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을 적용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원가가 산정된 부분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과 입찰가격 평점을 95% 입찰시 만점(현행은 88%)을 받도록 평점산식을 일부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 ③ 등급별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시공실적 합산방식, 실적 평가기준 완화방식 등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해서 현행'예산 10% 절감방안'은 최소한 실시설계 이전단계에 있는 사업에만 실시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연속육시점까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유보해야 함.
 -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덤핑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저가심의 기능을 예산절감보다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도록 강화해야 함.
 - ④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확대 시행토록 발주체계의 전환
 - 특히, 대형건설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분리공사의 금지조항의 예외사항을 살려 대전광역시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분할 발주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하도급제도의 개선
- 하도급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건설 하도급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하도급자의 효과적인 보호제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재검토 및 정책대안 등을 제시함.
 - ① 건설 하도급거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 따라서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화 정책도 다른 독과점산업에 있

- 어서의 하도급 거래와는 차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함.
- ② 하도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바,
 - 이를 확대 시행해야 하고, 또한 입찰시 하도급할 업체와 하도급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③ 2009년 3월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통제권 저하로 효율적인 공정관리의 어려움과 사적 자치원칙의 훼손, 하도급대금 주기장기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전면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정책대안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하도급대금 지급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와 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

■ 건설산업 선진화와 활성화 : 대전광역시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장기 지원방향
- 대전광역시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는
 -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시책을 우선 순위를 두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향후 비중을 두고 역점을 두어야 할 지원시책 마련.
 -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도 적극 수행.
- 현재 및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지원시책
- ① 대전광역시 지원 시책 중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

문건설업 모두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지역협력업체 등록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유도하는 시책도 중요함을 지적함.

②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하는 행정지원 시책으로는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종합건설업)과 효율적인 업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전문건설업)을 가장 많이 지적함.

- 공공사업에의 단계별 참여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기타 민간사업에의 단계별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의 강화 등도 중시함.

□ 건설산업 선진화

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역적 우선과제 -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발주제도 개선에 의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②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추진과제 - 보증제도 개선, 보증시장 경쟁체제의 확대,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의 촉진.

③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④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 설계기준, 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설계·엔지니어링 입찰·낙찰방식의 개선.

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의 주종을 이루는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기존에 실시하던 공사 수주 확대 지원, 부실업체 규제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덤핑수주 및 부실시

공 방지,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추진 기능을 강화함.

- 부가하여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극복 지원, 자금악화 해소 지원 등의 추진 기능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 단계별 방향

○ 절대 다수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한 채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방향으로

① 단·중기적으로는 신생기업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조성과 함께 공공건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② 장기적으로는 복잡다단한 중소기업체들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체들은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호·지원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자각해야 함.

□ 공사 수주확대 지원

○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지원하기 위해

① 조달청에의 위임발주를 자제하고 지역에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유도

② 대전광역시, 시 산하기관, 중앙 공기업 등의 지역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가 기회를 권장 또는 보장해야 함.

- 아울러,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20억원 미만의 의무하도급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부실업체 규제 :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①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기술자, 장비 기준 등으로 현재보다

강화하고, 대전광역시시는 관련 협회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강화함.

- ②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입찰자격조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정보 DB 등에 의한 기업정보 공개를 확대함.

□ 기타 행정지원 강화 사항

- ①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사항 - 지자체의 발주물량의 증대, 중소기업보호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
- ② 자금악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확대시행, 금융권의 대출 확대 환경조성,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상향조정.

■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양극화문제 해소대책, 상생협력 유도 및 정부의 지원사항, 종합건설업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 정립 방안,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양극화 인식 해소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양극화 인식 자체를 해소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중소기업체의 수주능력을 제고하고, 수주물량을 확대해야 함.
 - 특히, 전문건설업은 저가하도급의 방지를 부가하여 지적함.

□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① 건설업체간 상생협력방안과 관련해서 우선,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
 -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을 가장 중요함.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종합(또는 대형)건설업은 CM(건설사업관리),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의 역할 담당, 공사규모별 시장 배분도 중요함.

②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 중소기업체 수주 지원,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 강화가 가장 중요
- 대·중·소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십,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도 중요
- 종합건설업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의 정립 필요. 이를 위해 현행 업역과 영업범위가 분할된 시장구도를 통합된 시장구도로 개선,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배분구도를 기업의 역할분담에 따른 구도로 전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경쟁시스템을 실질적인 기술경쟁시스템으로 전환, 수주를 위한 형식적 협력시스템을 생산효율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함.

□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 업체간 상생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 특히 자금결제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 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사내에 협력체제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대형업체와 지역중소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 지역간 업체들의 협력 뿐 아니라 수도권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
 - 이를 위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소규모 기업체 적합한 독자적인 틈새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함으로써 대형업체 중심의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가격, 납품 등의 교섭우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함.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및 추이	9
제1절 건설업과 지역경제	9
1.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상호작용관계	9
2.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	11
제2절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17
1. 대전의 건설업 위상	17
2. 대전의 건설업 현황	22
제3절 대전지역 건설업체 현황	35
1. 개관	35
2. 산업세분류별 현황	39
제4절 대전광역시 건설업 시책 및 성과	43
1. 2009년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43
2. 2009년도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성과	45
제3장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	53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53
1. 조사의 목적	53
2. 설문조사 기획 및 주요 내용	53

제2절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55
1. 자본금 및 종업원수	55
2. 경영상태 평가	57
3. 자금사정 평가	61
4. 경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제	66
제3절 지역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68
1. 지역 건설업체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68
2. 입찰 관련 제도	73
3. 하도급 관련 제도	76
제4절 지역 건설업 상생협력 관련 실태 및 문제점	90
1. 건설업 양극화 현상	90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부족	93
제4장 대전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97
제1절 관련제도 개선 : 중앙정부	97
1.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제도의 개선	97
2.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102
3. 하도급 관련 제도의 개선	109
제2절 건설산업 선진화와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113
1. 대전광역시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113
2. 지역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14
3.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123
제3절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131
1.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대책	131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132
3.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135
4. 대형업체와 지역중소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13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요약	141
제2절 정책제언	144
1. 관련제도의 개선 : 중앙정부	144
2. 건설산업 선진화와 활성화 : 대전광역시	146
3.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147
4.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149
참고문헌	151
부록 : 설문지	157

- 표 목 차 -

<표 2-1>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3
<표 2-2> 건설 및 서비스산업의 업종별·지역별 생산유발효과	14
<표 2-3> 대전지역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추이	17
<표 2-4> 대전지역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18
<표 2-5> 대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기여율	19
<표 2-6> 대전의 산업별 입지계수	20
<표 2-7> 대전의 산업별 고용탄성치	21
<표 2-8> 대전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22
<표 2-9> 대전지역 건설발주액 추이	23
<표 2-10> 대전지역 건설수주액 추이	24
<표 2-11>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2007)	24
<표 2-12>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 추이	25
<표 2-13> 대전지역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2007)	26
<표 2-14> 대전지역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26
<표 2-15>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2007)	27
<표 2-16>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 추이	28
<표 2-17>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2007)	29
<표 2-18>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 추이	29
<표 2-19>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도급계약 실적(2007)	30
<표 2-20>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원도급기성액(2007)	30
<표 2-21>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원·하도금액(2007)	31
<표 2-22> 대전지역 원·하도급 계약실적 추이	32
<표 2-23> 대전지역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추이	33
<표 2-24> 대전지역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34
<표 2-25> 대전지역 건설업체 현황(2008.12.31)	35

<표 2-26> 대전지역 건설업체수 변화추이	36
<표 2-27> 대전지역 건설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37
<표 2-28> 대전지역 건설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38
<표 2-29>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종사자지위별 종사자수	39
<표 2-30> 대전지역 건설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40
<표 2-31> 대전지역 건설업의 세부업종별 사업체수 변화추이	41
<표 2-32> 대전지역 건설업의 세부업종별 종사자수 변화추이	42
<표 3-1> 직접 시공비율(종합건설)	57
<표 3-2> 종합건설업체의 지역전문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	57
<표 3-3> 5년 전과 1년 전 대비 경영상태 비교	58
<표 3-4> 경영상태 개선 이유	59
<표 3-5> 경영상태 악화 이유	59
<표 3-6> 향후 경영상태 전망	60
<표 3-7> 향후 경영상태 개선 전망 이유	60
<표 3-8> 향후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61
<표 3-9> 5년 전과 1년 전 대비 매출액 비교	62
<표 3-10> 전년도 대비 자금사정(전문건설)	63
<표 3-11> 전년도 대비 자금사정 개선·악화 원인(전문건설)	63
<표 3-12> 향후 건설경기 전망	64
<표 3-13> 향후 건설경기 낙관적 전망 이유	65
<표 3-14> 향후 건설경기 부정적 전망 이유	65
<표 3-15> 경영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제	66
<표 3-16> 지역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제도가 건설업에 미친 영향(종합건설)	69
<표 3-17> 지역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의 중요도(종합건설)	69
<표 3-18>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70
<표 3-19> BTL 민간투자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71
<표 3-20>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71
<표 3-2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72
<표 3-22>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평가(종합건설)	73

<표 3-23> 현행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종합건설)	74
<표 3-24>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75
<표 3-25> 등급별 입찰제도의 문제점(종합건설)	75
<표 3-26> 현행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평가(종합건설)	76
<표 3-27>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종합건설)	76
<표 3-28>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불만사항(전문건설)	77
<표 3-29>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여부	79
<표 3-30>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이유	79
<표 3-31> 건설업겸업 제한 철폐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종합건설)	80
<표 3-32>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계약조상 설정사례 유무 여부(전문건설)	81
<표 3-33> 불공정계약조항 내용(전문건설)	81
<표 3-3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사례(전문건설)	82
<표 3-35>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 사례(전문건설)	82
<표 3-36> 이중계약이 전체 하도급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전문건설)	83
<표 3-37> 이중계약 위장 내용(전문건설)	83
<표 3-38> 실제하도급계약과 위장계약 금액 차이(전문건설)	83
<표 3-39> 하도급공사 입찰금액 결정방식(전문건설)	84
<표 3-40> 하도급공사 수주방법(전문건설)	84
<표 3-41> 실행가격 미만 저가 투찰의 주요 원인(전문건설)	85
<표 3-42> 하도급 공사대금 어음수령비율(전문건설)	86
<표 3-43> 공사대금 수령 만기일(전문건설)	86
<표 3-44>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지급 경험(전문건설)	87
<표 3-45>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경험 여부(전문건설)	87
<표 3-46>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이유(전문건설)	87
<표 3-47> 계약금액 조정 공사적용 여부(전문건설)	88
<표 3-48> 추가공사비 수령 못한 경험 및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경험(전문건설)	88
<표 3-49>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형태(전문건설)	89
<표 3-5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차이	90
<표 3-51> 건설업체 양극화 정도	91

<표 3-52> 양극화가 심각한 순서	91
<표 3-53> 건설산업 양극화의 원인	92
<표 3-54> 건설산업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	92
<표 3-55>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생협력 정도	93
<표 3-56> 종합건설업체 내부간 상생협력 정도(종합건설)	93
<표 3-57>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	94
<표 4-1>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97
<표 4-2> 지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	100
<표 4-3> 지역제한입찰공사 물량 확대방안(종합건설)	100
<표 4-4>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09.3.5)	101
<표 4-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전문건설)	102
<표 4-6> 현행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103
<표 4-7> 하도급자 효과적 보호제도의 중요도(전문건설)	111
<표 4-8> 대전광역시 지원 중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	113
<표 4-9>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행정지원 시책	114
<표 4-10>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역적 우선과제	116
<표 4-11>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과제	117
<표 4-12>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규제완화 과제	118
<표 4-13>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119
<표 4-14> 정부의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119
<표 4-15>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120
<표 4-16> 정부의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과제	121
<표 4-17>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122
<표 4-18> 정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과제	122
<표 4-19>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의견	126
<표 4-20>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완화 방법	127
<표 4-21> 담핑수수 및 부실시공 방지 방안	127
<표 4-22>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	128
<표 4-23>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129

<표 4-24> 최근 자금악화현상 해소방안(전문건설)	130
<표 4-25>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대책	131
<표 4-26>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	132
<표 4-27>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133
<표 4-28>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133
<표 4-29> 경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기본방향	135

- 그림 목 차 -

[그림 2-1] 지역경제·지역건설·지역재정의 상호작용관계	10
[그림 2-2]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	11
[그림 3-1] 조사대상업체의 자본금 분포	55
[그림 3-2] 조사대상업체의 종업원수 분포	56
[그림 3-3]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원·하도급 구조	78
[그림 4-1]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15

제 1 장 서론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건설업은 지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며, 제조업 등 다른 관련 산업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반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향후 조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광역경제권사업 추진, 구도심 재생사업 등 예정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고려할 때, 대전지역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금융위기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국내 및 대전의 경기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부족 및 경영의 어려움으로 건설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 지속과 함께 지역의 일반건설 및 주택경기도 침체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일반건설업 및 주택건설업의 경기악화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그 원인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1.7배, 생산유발효과가 1.04배로 분석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건설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나 임시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아서 건설업의 경기악화는 서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의 육성과 발전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육성은 지역경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재 대전지역 건설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내부적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건설업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건설업 경기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향후 예정된 지역의 각종 건설투자의 혜택이 지역업체로 흘러들어 가도록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건설시장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막연하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 건설시장이 어떤 규모와 구조로 작동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지역건설업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지역건설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 지역건설업의 통계적 현황 분석, 지역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정책적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관련 개선방안과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는 중앙정부, 대전광역시, 건설업체 등 관련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추진과제 및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 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로 건설업 지원제도 관련자료, 법령집 등을 통해 건설업의 생산체계 및 현실적 특성을 이해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전지역 건설업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별로 구분하여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 건설경기전망, 경영상 애로점과 극복을 위한 과제 및 정책, 지역건설업체 보호관련 정책 및 제도, 건설업 제도개선 관련 사항, 하도급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업 업역분리 관련 제도,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및 방안, 대전광역시 역할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의 실태와 경영상 애로점을 파악하고, 건설업(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제점 등을 적출하고, 지역 건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 그리고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내용으로 건설업과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

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의 산업적 특성 개관, 그리고 발주액, 수주액, 시공액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건설경기 추이와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조직형태·종사자 지위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전지역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대전지역 건설업 관련 정책 및 제도관련 문제점, 지역 건설업 상생협력 관련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설관련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전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행주체가 중앙정부별, 대전광역시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상생협력방안에 관련해서는 주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건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제 2 장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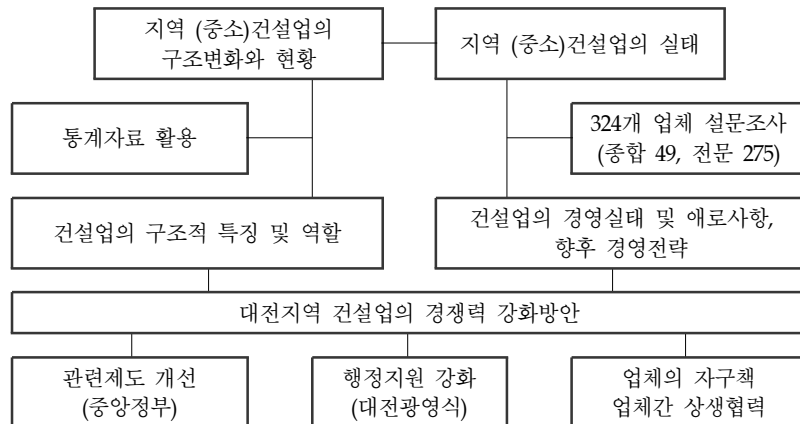
제1절 건설업과 지역경제

제2절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제3절 대전지역 건설업체 현황

제4절 대전광역시 건설업 시책 및 성과

[연구의 분석 틀]



제 2 장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및 추이

제1절 건설업과 지역경제

1.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상호작용 관계¹⁾

1) 부가가치 생산 및 생산성 현황

(1)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세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의 흐름은 지역경제↔지역재정↔지역건설의 3자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지역경제와 지역재정의 관계를 보면, 지역경제는 지역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반면, 지역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지역건설은 지역경제의 한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지역재정의 상호작용관계가 지역건설에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 건설산업은 여타 지역경제활동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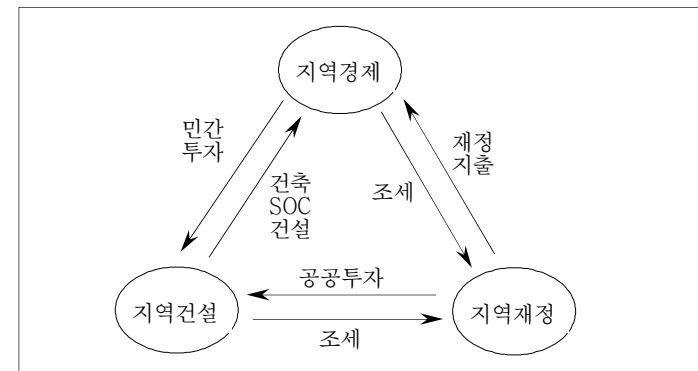
지역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건설은 지역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건설수요와 지역재정으로 부터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건설수요를 통하여 산업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반대로, 지역건설은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SOC건설 등과 같은 지역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즉, 지역건설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SOC 및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자재와

인력 등을 수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는 곧 바로 지역경제의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역재정에 대해서는 건설활동의 결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여타 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건설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지방재정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3자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순환의 흐름을 타게 되나, 불황기에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침체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선택된다. 즉, 지역재정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지역내 연관산업 및 고용 증대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건설산업은 정책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림 2-1] 지역경제·지역건설·지역재정의 상호작용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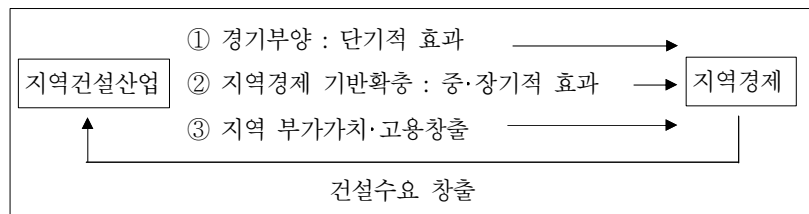
자료 : 윤영선·강민석(2001),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윤영선·강민석(2001),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6쪽의 내용에서 정리함.

2.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²⁾

지역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기를 유지하고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내 SOC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내 기반산업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2]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역할



1)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은 건설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 흡수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건설산업을 매개로 한 건설 투자는 타 경제 또는 산업활동보다 높은 지역내 산업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효과들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단기적인 지역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2)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패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IDI연구보고서 2006-07, 13~18쪽의 내용에서 정리함.

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산업연관분석이다. <표 2-1>은 2000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전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파급효과와 건설산업을 포함한 28개 산업의 감응도 및 영향력 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에서 보면,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합계는 1.990이다. 즉, 도로, 철도 등의 건설사업에 1,000억원 정도의 정부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은 1,99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우보다 0.132 정도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의 확대 또는 건설투자의 증대는 우리나라 총생산액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과 취업의 경우에도 1,000억원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787명의 고용과 2,085명의 취업 기회가 생긴다.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 그 차이는 1,000억원 투자 대비 484명 또는 전체 산업 평균치 대비 137.15% 수준이다. 더욱이 건설 고용기회의 확대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계층간의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산업의 성장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총생산액을 어느 정도 변동시킬 수 있는 지는 영향력계수의 크기로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의 영향력계수는 1.071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7.1% 포인트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설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수준을 상회하며,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건설투자는 경기부양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특정 산업의 생산액은 얼마나 증가하는 지는 감응도계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감응도계수는 불과 0.685로서 광산품, 정밀기기,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등과 함께 매우 낮다. 이와 같이 다른 산업이 총량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건설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일단 건설산업의 생산액 또는 매출액이 확대된다면 다른 산업의 성장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국 차원에서의 건설산업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대한 지

역 건설산업의 역할 역시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 업	생산유발효과		산업별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명/10억 원)		취업유발효과 (명/10억 원)	
	건설	전산업 평균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건설	평균	건설	평균
농림수산물	0.006	0.069	1.046	0.884	0.027	0.298	0.362	4.039
광산물	0.015	0.042	0.638	0.855	0.099	0.275	0.109	0.304
음식료품	0.007	0.072	1.082	1.133	0.023	0.253	0.032	0.344
섬유 및 가죽제품	0.005	0.056	0.847	1.113	0.043	0.534	0.050	0.612
목재 및 종이제품	0.029	0.081	1.228	1.047	0.156	0.445	0.180	0.512
인쇄, 출판 및 복제	0.006	0.048	0.723	1.201	0.071	0.524	0.085	0.633
석유 및 석탄제품	0.037	0.081	1.217	0.612	0.013	0.027	0.013	0.028
화학제품	0.070	0.125	1.882	1.089	0.244	0.437	0.255	0.456
비금속광물제품	0.110	0.055	0.823	1.089	0.646	0.319	0.701	0.346
제1차금속제품	0.143	0.117	1.757	1.180	0.267	0.218	0.279	0.227
금속제품	0.086	0.056	0.838	1.158	0.763	0.496	0.915	0.595
일반기계	0.044	0.058	0.882	1.152	0.293	0.386	0.320	0.421
전기 및 전자기기	0.058	0.068	1.032	0.922	0.219	0.261	0.226	0.269
정밀기기	0.003	0.041	0.624	1.083	0.026	0.350	0.029	0.378
수송장비	0.005	0.058	0.882	1.271	0.021	0.239	0.021	0.244
가구·기타제조업제품	0.006	0.040	0.607	1.071	0.060	0.418	0.078	0.537
전력, 가스 및 수도	0.025	0.072	1.084	0.807	0.057	0.164	0.057	0.164
건설	1.008	0.045	0.685	1.071	12.044	0.543	12.681	0.571
도소매	0.042	0.073	1.106	0.834	0.706	1.230	1.743	3.034
음식점 및 숙박	0.014	0.069	1.047	1.065	0.197	1.005	0.452	2.313
운수 및 보관	0.021	0.057	0.854	0.814	0.229	0.626	0.318	0.866
통신 및 방송	0.017	0.062	0.939	0.898	0.061	0.226	0.063	0.233
금융 및 보험	0.051	0.088	1.321	0.800	0.560	0.959	0.564	0.966
부동산·사업서비스	0.132	0.118	1.773	0.801	0.648	0.579	0.814	0.728
공공행정 및 국방	0.000	0.036	0.538	0.820	0.000	0.553	0.000	0.553
교육 및 보건	0.017	0.053	0.792	0.841	0.332	1.006	0.371	1.121
사회·기타서비스	0.004	0.043	0.647	1.010	0.064	0.660	0.132	1.360
기타	0.030	0.074	1.109	1.377	0.000	0.000	0.000	0.000
합계	1.990	1.858			17.871	13.029	20.847	21.854

자료 : 한국은행(2003), 2000년 산업연관표

다만, 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는 외부 지역으로의 유출현상으로 지역내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설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조업 활동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내 효과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산유발효과에 비하여 고용유발효과는 일부 고급기술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내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 건설산업은 높은 지역내 산업연관 관계를 통하여 지역내 생산과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2-2> 건설 및 서비스산업의 업종별·지역별 생산유발효과

지역	건설	도매·소매	음식·숙박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서비스산업 평균
서울	87.26	120.97	103.01	95.31	112.13	109.10	92.99
부산	89.56	124.70	105.34	99.11	114.98	111.51	96.67
대구	98.48	102.07	107.16	99.77	104.14	100.45	99.37
인천	105.76	112.30	126.72	108.06	101.94	96.79	106.61
광주	93.60	86.27	90.23	98.82	105.20	94.58	94.24
대전	92.43	92.95	87.59	98.35	102.61	100.57	96.49
울산	130.11	98.85	119.81	107.62	110.93	102.44	123.96
경기	102.31	108.09	101.06	101.31	93.82	95.92	101.05
강원	88.36	94.26	86.14	93.15	93.47	94.19	88.02
충북	100.22	99.69	98.95	100.55	96.32	101.03	97.73
충남	104.79	104.45	106.56	101.99	91.10	98.61	103.87
전북	93.75	94.38	93.35	94.73	95.80	98.46	95.04
전남	106.93	82.01	85.02	100.41	89.82	97.75	104.86
경북	110.41	96.13	94.84	103.60	93.66	98.87	104.33
경남	109.53	96.56	106.99	103.99	94.94	104.97	108.92
제주	86.50	86.32	87.23	93.22	99.11	94.79	85.85
전국평균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전국 평균 = 100

상기한 <표 2-2>는 지역별 주요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전의 건설투자가 전국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92.43에 그쳐 전국 평균수준(100)보다 7.57% 포인트 낮다. 대전지역의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대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울산(130.11)과 인천(105.76), 대구(98.48)에 이어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의 건설투자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대도시 지역의 평균적인 생산유발효과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의 공급 역할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물을 공급, 확충하는 역할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역할로서 중·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발전소 등 지역내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택·사무실·상가·공업용 건물 등 직접적인 지역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역시 공급하게 된다.

지역 건설산업의 이러한 역할은 개발사업과 같이 건설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요를 수주받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건설산업은 매개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 등으로부터의 투자수요가 위축될 경우 건설산업의 지역내 SOC 및 기반 시설물 등을 구축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자기 지역의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한 SOC 등 기반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지역내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

지역내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건설산업이 타 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아 시공함으로써 지역내 새로운 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수출 또는 기반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대부분 제조업)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설산업 특히, 지역의 건설산업은 대부분 지역내에서 수주와 시공을 하는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건설산업의 경우는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기반산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업과 더불어 건설업이 서울시의 기반산업 즉, 타지역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윤영성, 세지역 MRIO모형을 활용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1998). 지역의 경우 과거 대구지역의 건설산업, 특히 주택 건설업체들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대도시들은 건설산업을 기반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중·장기 전략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대전지역 건설업 현황

1. 대전의 건설업 위상

1)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수준

(1)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수준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대량부도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비중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진입규제 완화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건설수요마저 감소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표 2-3> 대전지역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대전지역	전산업 95,595	116,839	120,876	144,161	174,239	186,394	205,852
	건설업 (비중) 13,089 (13.7)	15,433 (13.2)	12,725 (10.5)	11,806 (8.2)	16,901 (9.7)	17,147 (9.2)	15,204 (7.4)
전국	전산업 4,101,306	4,969,937	5,276,032	6,209,052	7,316,268	8,178,119	9,121,768
	건설업 (비중) 413,601 (10.1)	519,359 (10.5)	439,120 (8.3)	477,188 (7.7)	614,201 (8.4)	678,286 (8.3)	751,613 (8.2)
대전지역전국대비 전산업비중	2.3	2.4	2.3	2.3	2.4	2.3	2.3
전국대비 건설업비중	3.2	3.0	2.9	2.5	2.8	2.5	2.0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기준 지역경제에서의 위상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1995년 건설업이 지역

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재 7.4%까지 하락하였다. 전국의 경우는 건설업 비중은 1995년 대전보다 낮은 10.1%를 보인 이후 2001년까지 낮아졌지만, 다시 2003년 8.4%로 반등하여 2007년 현재 8.2%로 대전의 비중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의 전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2.3~2.4% 내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 건설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1995년 3.2%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2.0%로 낮아져 전산업의 전국대비 비중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2) 건설업의 건설투자 수준

(1) 건설업의 건설투자 수준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전지역은 1995년 전산업 대비 30.2%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후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2001년 17.7%까지 하락하였다.

<표 2-4> 대전지역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단위 : 억원, %)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대전지역	총 지출 95,595	116,839	120,876	144,161	174,239	186,394	205,852
	건설투자 (비중) 28,886 (30.2)	32,630 (27.9)	27,656 (22.9)	25,519 (17.7)	37,958 (21.8)	39,507 (21.2)	33,193 (16.1)
전국	총 지출 4,101,306	4,969,937	5,276,032	6,209,052	7,316,268	8,178,119	9,121,768
	건설투자 (비중) 920,005 (22.4)	1,117,401 (22.5)	966,145 (18.3)	1,082,164 (17.4)	1,408,099 (19.2)	1,575,697 (19.3)	1,728,304 (18.9)
대전지역전국대비 지출비중	2.3	2.4	2.3	2.3	2.4	2.3	2.3
전국대비 건설투자비중	3.1	2.9	2.9	2.4	2.7	2.5	1.9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그러나 2003년 회복기미로 돌아서 2005년까지 21%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역경기의 침체에 따라 2007년 16.1%로 하락하였다. 전국도 대전지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및 전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의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2-4> 참조).

이와 함께 대전지역의 전국대비 총지출비중은 2.3%~2.4% 수준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대전지역의 전국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대전지역 총지출 중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세와 함께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1995년 3.1%에서 2007년 1.9%수준까지 하락하였다(<표 2-4> 참조).

3)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기여율

(3)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기여율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견고한 지역내총생산 성장 견인을 주도한 산업은 서비스업이고,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 비중의 감소와 함께 성장 기여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1990년~2007년 기간 중 -3.7%의 지역내총생산 기여율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990년대 초반인 1990년~1994년과 2000년대 초반인 2000년~2004년 기간 중에만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기여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표 2-5> 대전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기여율 (단위 : %)

구 분	1990 ~1999	2000 ~2007	1990 ~2007	1990	1995	2000	2005
				~1994	~1999	~2004	~2007
농림어업	-0.7	-0.6	-0.3	-0.5	-1.3	-0.3	-1.2
광공업	12.3	22.7	17.7	10.5	30.8	26.0	29.8
전기·가스·수도사업	2.8	1.4	2.7	3.2	1.7	2.7	0.9
건설업	-2.5	-2.4	-3.7	11.3	-18.6	7.5	-29.6
서비스업	88.0	78.9	83.6	75.5	87.4	64.0	100.1

특히 최근 들어 2005년~2007년 기간에는 매우 큰 폭인 -29.6%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업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건설업의 지역내 산업특화도 및 고용흡수력

(1) 건설업의 산업특화도

전국 산업별 생산구조에 대한 산업입지특성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대전은 주로 서비스업 분야에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건설업은 1990년대 대전지역에서는 가장 특화된 산업이었으나 2000년 이후 서비스업에 역전된 후 2007년에는 입지계수가 1.0보다 낮아 특화산업이라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전국 산업별 생산구조를 볼 때 건설업은 역시 대전의 특화된 산업이라 할 만큼 입지계수가 컸던 만큼 향후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건설업이 활성화 될 경우 대전지역에서 건설업의 특화도는 회복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대전의 산업별 입지계수

(단위 : %)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농림어업	0.11	0.15	0.09	0.12	0.11	0.09	0.08
광공업	0.71	0.72	0.69	0.72	0.66	0.59	0.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54	0.51	0.58	0.81	0.64	0.68	0.72
건설업	1.34	1.24	1.24	1.04	1.13	1.08	0.88
서비스업	1.20	1.19	1.23	1.20	1.21	1.26	1.27

주 : 지역내총생산 2000년 당해연도가격 기준

(2) 건설업의 고용흡수력

고용증가율을 지역내총생산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대전지역산업 전체로는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6년부터 상승추세로 반전하

었다. 즉, 1995년 4.1에서 2005년 -2.3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각각1.4, 1.6으로 상승하여 산업발전예 따른 고용흡수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부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부문이며,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부문의 고용흡수력은 1995년 이후 당해연도와 1996년, 2001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997년~1999년 2002년 2004년 등 대부분의 년도에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부문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대전의 산업별 고용탄성치

(단위 : %)

산업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어업	-24.1	3.0	-3.4	48.5	0.5	-0.5	91.2	0.5	-1.6	0.8	-0.6	-0.1	-17.7
광공업	0.0	-0.4	-1.4	1.1	0.9	0.1	0.8	-1.8	-0.6	0.1	0.5	0.0	0.3
전기·가스·수도사업	2.5	38.2	-0.2	-0.2	-19.5	0.4	0.0	-78.6	-4.8	-0.2	1.7	-5.8	-2.3
건설업	-0.2	-1.0	1.7	1.8	2.0	0.6	-2.1	5.4	0.1	1.9	0.6	-6.0	0.7
서비스업	1.4	0.3	0.0	1.6	0.9	0.4	3.0	0.5	-0.2	1.4	-0.8	1.2	1.2
전산업	4.1	0.2	-0.2	1.4	0.9	0.4	2.4	0.3	-0.2	0.7	-2.3	1.4	1.6

(3)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대전의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지역경제의 비중이 매우 적은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부문을 제외하면, 건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1995년 54.8에서 2007년 80.0으로 상승한 수준이며, 광공업은 같은 기간 30.1에서 69.4, 서비스업은 23.5에서 38.1로 각각 상승추세를 보였지만, 건설업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상승추세는 건설

업부문의 장비 현대화와 1인당 자본 장비율 상승, 그리고 건설기술 개발 및 향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지역 산업 전체를 볼 때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서비스업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1995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노동생산성 상승이 가장 빠르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산업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2-8> 대전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단위 : 백만원/명)

산업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농림어업	1,182.0	1,292.0	1,192.3	370.8	292.5	232.7	108.5
광공업	30.1	41.9	43.8	48.7	57.9	61.7	69.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3.6	62.1	72.5	123.9	106.4	129.3	143.4
건설업	54.8	64.3	77.7	72.1	87.1	93.2	80.0
서비스업	19.3	23.1	25.7	27.8	33.3	37.3	38.1
전산업	23.5	28.7	31.0	33.2	39.4	43.4	44.1

2. 대전의 건설업 현황

1) 건설 발주액

외환위기 이후 대전지역 건설업 발주액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 2,469억원까지 하락한 후, 200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건축부문의 투자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00년대 전후 대전의 건설은 주로 아파트 건설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외환위기 이전 노은동 등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설발주액이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발주액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1년부터 다시 대덕테크노밸리

건설 등에 따라 다시 발주액이 증가하였다.

<표 2-9> 대전지역 건설발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계 (증감률)	627,215 -	360,269 (-42.6)	362,992 (0.8)	417,775 (15.1)	509,949 (22.1)	678,337 (33.0)	808,973 (19.3)	777,744 (-3.9)
	건축	348,359	167,977	224,544	272,847	308,819	465,046	580,372	524,303
	토목	275,689	190,971	136,526	143,536	199,683	211,875	227,135	248,020
대전	계 (전국대비비중) (증감율)	18,967 <3.0> -	5,347 <1.5> (-71.8)	6,939 <1.9> (29.8)	2,469 <0.6> (-64.4)	10,458 <2.1> (323.7)	12,969 <1.9> (24.0)	16,823 <2.1> (29.7)	16,244 <2.1> (-3.4)
	건축	12,824	3,610	4,238	1,902	3,860	8,916	15,104	14,696
	토목	6,098	1,709	2,701	559	6,568	4,046	1,667	1,507
	전문공사	44	28	0	7	31	7	52	41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2-10> 대전지역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전	21,506	30,124	36,993	44,790	34,476	42,253	39,854	43,401
<구성비> (증감율)	<2.1> (-15.5)	<2.6> (40.1)	<2.4> (22.8)	<2.7> (21.1)	<2.1> (-23.0)	<2.2> (22.6)	<2.0> (-5.7)	<1.6> (8.9)
전국	1,030,169	1,150,766	1,533,986	1,679,861	1,654,654	1,892,029	2,023,084	2,744,587
(증감율)	(8.6)	(11.7)	(33.3)	(9.5)	(-1.5)	(14.3)	(6.9)	(35.7)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2) 공사 종류별 건설수주액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7년 중 대전지역 건설수주액 4조 3,401억원 중 건축공사가 3조 3,231억원으로 전체의 76.6%, 토목공사가 8,443억원으로 전체의 19.5%, 산업설비 및 조경이 각각 857억원(2.0%), 871억원(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지역의 건설수주는 대부분 건축공사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국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국에 비해 건축공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토목공사와 산업설비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대비 비중을 볼 때도 건축공사의 전국대비 비중이 높다는 점으로도 확인 된다.

<표 2-11>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2007)

(단위 : 억원, %)

공사종류	전국		대전		
	금액	공사종류별 비중	금액	공사종류별 비중	전국대비 비중
총계	2,744,587	100.0	43,401	100.0	1.6
건축공사	1,637,423	59.7	33,231	76.6	2.0
토목공사	736,304	26.8	8,443	19.5	1.1
산업설비	321,025	11.7	857	2.0	0.3
조경	49,835	1.8	871	2.0	1.7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2) 건설 수주액

(1) 개요

대전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3조 124억원으로 전년대비 40.1%로 대폭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2001년이 되어서야 반전되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22.8%, 21.1%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의 경우에도 1998년 중 크게 위축되었던 수주액이 2000년 이후 증가를 보이며 안정을 찾는 모습과 대비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06년 전국의 건설수주액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은 하락하고 있고, 2007년도 대전과 전국 모두 건설수주액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전국은 대폭 증가하고 대전은 소폭 증가에 그친 점으로 볼 때, 대전지역의 최근 건설수주 형편은 전국과 비교하여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의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을 연도별 변화 추이로 보면, 역시 건축공사비의 비중이 2000년 60.3%에서 2007년 76.6%를 보이고 있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2007년 들어 2006년보다 비중이 2.5%p(79.1%→76.6%) 하락하였다. 반면, 토목공사는 2000년 34.3%에서 2007년 19.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7년은 건축공사의 비중 하락부분이 토목공사의 비중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공사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비중)	21,506 (100.0)	30,124 (100.0)	36,993 (100.0)	44,790 (100.0)	34,476 (100.0)	42,253 (100.0)	39,854 (100.0)	43,401 (100.0)
건축공사 (비중)	12,973 (60.3)	16,435 (54.6)	26,281 (71.0)	35,743 (79.8)	25,897 (75.1)	33,242 (78.7)	31,535 (79.1)	33,231 (76.6)
토목공사 (비중)	7,369 (34.3)	12,692 (42.1)	9,732 (26.3)	7,966 (17.8)	6,744 (19.6)	6,438 (15.2)	6,020 (15.1)	8,443 (19.5)
산업설비 (비중)	767 (3.6)	509 (1.7)	567 (1.5)	651 (1.5)	907 (2.6)	1,657 (3.9)	1,473 (3.7)	857 (2.0)
조 경 (비중)	398 (1.8)	488 (1.6)	412 (1.1)	430 (1.0)	928 (2.7)	916 (2.2)	826 (2.1)	871 (2.0)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3) 등록 업종별 건설수주액

등록 업종별 건설수주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7년 대전지역 건설 수주액 전체 중 종합건설업체에 의해 2조 5,566억원으로 전체의 58.9%, 전문건설업체에 의해 1조 2,159억원으로 전체의 28.0%로 이들 업체들이 수주의 대부분(전체의 86.9%)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전기공사업체가 6.1%, 정보통신공사업체가 5.9%, 기타 업체가 1.1% 순으로 수주하였다.

전국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추세는 비슷하지만, 대전지역의 종합건설업체에

의한 건설수주액 비중이 전국보다 낮은 반면,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수주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대전지역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2007)
(단위 : 억원, %)

등록업종	전 국		대 전		전국대비 비중
	금 액	등록업종별 비중	금 액	등록업종별 비중	
합 계	2,744,587	100.0	43,401	100.0	1.6
종합건설업	1,854,143	67.6	25,566	58.9	1.4
전문건설업	643,630	23.5	12,159	28.0	1.9
전기공사업	142,652	5.2	2,629	6.1	1.8
정보통신공사업	86,246	3.1	2,582	5.9	3.0
기 타	17,916	0.7	465	1.1	2.6

주 : 기타는 소방시설업, 오수처리업, 난방시공업을 말함.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2-14> 대전지역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등록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21,506 (100.0)	30,124 (100.0)	36,993 (100.0)	44,790 (100.0)	34,476 (100.0)	42,253 (100.0)	39,854 (100.0)	43,401 (100.0)
종합건설업	9,954 (46.3)	15,567 (51.7)	20,488 (55.4)	24,394 (54.5)	15,337 (44.5)	25,018 (59.2)	21,306 (53.5)	25,566 (58.9)
전문건설업	8,362 (38.9)	10,044 (33.4)	10,957 (29.6)	14,806 (33.1)	14,278 (41.4)	12,118 (28.7)	12,415 (31.2)	12,159 (28.0)
전기공사업	1,541 (7.1)	2,610 (8.7)	2,148 (5.8)	2,597 (5.8)	2,164 (6.3)	2,349 (5.6)	2,329 (5.8)	2,629 (6.1)
정보통신공사업	1,262 (5.8)	1,494 (4.9)	2,883 (7.8)	1,968 (4.4)	2,150 (6.2)	1,980 (4.7)	3,398 (8.5)	2,582 (5.9)
기 타	387 (1.8)	408 (1.3)	518 (1.4)	1,025 (2.3)	548 (1.6)	788 (1.9)	406 (1.0)	465 (1.1)

주 : 기타는 소방시설업, 오수처리업, 난방시공업을 말함.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2000년 이후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에 의한 수주액은 2005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이후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수주액은 2003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2004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2000년 전체의 1.8%에서 2007년 7.8%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2007년 민간부문공사는 2조 5,265억원으로 전체공사액의 58.2%인 반면 공공부분은 1조 8,100억원으로 41.7%로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가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국의 경우는 민간공사가 전체의 62.0%, 공공부분이 27.4%, 기타가 10.6% 순으로 나타나 민간공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2007)

(단위 : 억원, %)

발주기관	전 국		대 전		
	금 액	발주기관별 비중	금 액	발주기관별 비중	전국대비 비중
총 계	2,744,587	100.0	43,401	100.0	1.58
공공부문	751,816	27.4	18,100	41.7	2.41
민간부문	1,702,622	62.0	25,265	58.2	1.48
기 타	290,149	10.6	36	0.1	0.01

주 : 기타는 국내외국기관과 기타를 말함.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대전지역은 2001년까지는 공공부문 공사비중이 더 높았으나 2002년부터는 민간공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비중은 이

후 2005년 전체의 71.1%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7년 전체의 58.2%수준까지 비중이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공사는 2005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2-16>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건설수주액 추이(2007)

(단위 : 억원, %)

발주기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비중)	21,506 (100.0)	30,124 (100.0)	36,993 (100.0)	44,790 (100.0)	34,476 (100.0)	42,253 (100.0)	39,854 (100.0)	43,401 (100.0)
공공부문 (비중)	11,937 (55.5)	15,847 (52.6)	13,931 (37.7)	13,055 (29.1)	11,875 (34.4)	12,201 (28.9)	12,489 (31.3)	18,100 (41.7)
민간부문 (비중)	9,530 (44.3)	14,277 (47.4)	23,061 (62.3)	31,734 (70.9)	22,596 (65.5)	30,051 (71.1)	27,360 (68.7)	25,265 (58.2)
기 타 (비중)	40 (0.187)	0.49 (0.002)	0.07 (0.000)	0.52 (0.001)	4.90 (0.014)	0.93 (0.002)	5.20 (0.013)	36 (0.084)

주 : 기타는 국내외국기관과 기타를 말함.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3) 건설 시공액

(1) 공사종류별

기성액을 기준으로 한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7년도 대전지역 건설업 공사액 3조 1,689억원 중 건축분야 2조 4,371억원으로 76.9%를 차지하여 건축분야 공사가 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토목공사가 5,238억원으로 16.5%, 산업설비가 1,189억원으로 3.8%, 조경공사가 891억원으로 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국과 비교할 때 건축공사가 전국의 경우 56.9% 수준으로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토목공사와 산업설비 등의 기성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표 2-17>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2007)
(단위 : 억원, %)

공사종류	전 국		대 전		전국대비 비중
	금액	공사종류별 비중	금액	공사종류별 비중	
총 계	1,816,670	100.0	31,689	100.0	1.7
건축공사	1,033,298	56.9	24,371	76.9	2.4
토목공사	525,762	28.9	5,238	16.5	1.0
산업설비	220,186	12.1	1,189	3.8	0.5
조 경	37,424	2.1	891	2.8	2.4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2-18> 대전지역 공사종류별 건설기성액 추이
(단위 : 억원, %)

공사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23,877 (100.0)	23,800 (100.0)	27,098 (100.0)	35,575 (100.0)	37,862 (100.0)	37,292 (100.0)	36,348 (100.0)	31,689 (100.0)
건축공사	14,755 (61.8)	14,977 (62.9)	16,730 (61.7)	25,530 (71.8)	28,102 (74.2)	28,013 (75.1)	27,260 (75.0)	24,371 (76.9)
토목공사	7,923 (33.2)	7,925 (33.3)	9,246 (34.1)	8,963 (25.2)	8,307 (21.9)	7,453 (20.0)	6,633 (18.2)	5,238 (16.5)
산업설비	791 (3.3)	482 (2.0)	671 (2.5)	677 (1.9)	740 (2.0)	959 (2.6)	1,730 (4.8)	1,189 (3.8)
조 경	409 (1.7)	416 (1.7)	450 (1.7)	404 (1.1)	713 (1.9)	867 (2.3)	724 (2.0)	891 (2.8)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2) 발주기관별 도급계약 실적

2007년도 대전지역 관내의 발주기관별 도급계약 실적은 총 15,759건에 1조 3,072 억원이다. 발주기관별로는 시청 및 산하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도급계약은 3,196건에 2조 6 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고, 국영기업체는 1,309건에 1 조 73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13.2%, 정부기관이 1,235건에 1조 70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8.2%를 차지하여 시청 및 국영기업체, 그리고 정부기관 등 정부부문의 역할이 높다.

의 역할이 높다.

<표 2-19>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도급계약 실적(2007)
(단위 : 건, 억원, %)

발주기관	대 전		전 국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합 계	15,759 (100.0)	13,072 (100.0)	530,741 (100.0)	584,572 (100.0)
정 부 기 관	1,235 (7.8)	1,070 (8.2)	22,386 (4.2)	39,889 (6.8)
지방자치단체	3,196 (20.3)	2,006 (15.3)	204,525 (38.5)	106,661 (18.2)
국영 기업체	1,309 (8.3)	1,730 (13.2)	23,080 (4.3)	61,577 (10.5)
공 공 단 체	956 (6.1)	460 (3.5)	9,713 (1.8)	13,486 (2.3)
주한외국기관	12 (0.1)	46 (0.4)	822 (0.2)	2,472 (0.4)
민 간	9,051 (57.4)	7,759 (59.4)	270,215 (50.9)	360,486 (61.7)

주 : ()는 비중.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3) 발주기관별 원도급 기성액

지역의 건설발주기관별 2007년 원도급 기성액은 앞의 발주기관별 도급계약실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원도급 기성액이 1조 4,051억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하여 원도급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20>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원도급기성액(2007)
(단위 : 억원, %)

발주기관	전 국		대 전		전국대비 비중
	원도급 기성액	발주기관별 비중	원도급 기성액	발주기관별 비중	
총 계	1,217,420	100.0	20,905	100.0	1.72
공공부문	354,441	29.1	6,854	32.8	1.93
민간부문	705,494	57.9	14,051	67.2	1.99
국내외국기관	2,937	0.2	0	0.0	0.00
기 타	154,547	12.7	0	0.0	0.00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이는 주로 아파트, 건물, 주택 등이 건축분야의 건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6,854억원으로 나머지 32.8%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외국기관이나 기타기관의 원도급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과 비교해서는 전국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국의 경우는 기타기관의 원도급 실적이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은 이들 부문의 실적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4) 발주기관별 원·하도급 실적

대전지역 건설업의 기성실적을 원·하도급별로 구분하여 보면, 총 3조 1,689억원의 기성액 중에서 원도급은 2조 905억원으로 전체의 66.0%, 하도급은 1조 784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여 원도급액 실적이 높다. 이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역시 민간부문의 원도급액이 1조 4,051억원 하도급액이 7,325억원으로 공공부문의 원도급액 6,854억원과 하도급액 3,441억원보다 높다.

원·하도급 계약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원도급 계약건수는 2001년 약 1만건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한 이후 2005년부터 1만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원도급 계약금액은 전반적인 상향 추세를 보이는 보이고 있으며, 원도급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의 비중은 하도급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하도급 계약건수는 2003년 6천건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감소하였고, 하도급 계약금액은 2003년 1조원을 초과한 이후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하도급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의 비중은 원도급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1> 대전지역 발주기관별 원·하도급액(2007)
(단위 : 억원, %)

발주기관	기성액 (비중)	원도급 (비중)	하도급 (비중)
총 계	31,689 (100.0)	20,905 (66.0)	10,784 (34.0)
공공부문	10,295 (100.0)	6,854 (66.6)	3,441 (33.4)
민간부문	21,376 (100.0)	14,051 (65.7)	7,325 (34.3)
국내외국기관	17 (100.0)	0 (0.1)	17 (99.9)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2-22> 대전지역 원·하도급 계약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약 건수	원도급	6,228 (68.3)	8,552 (67.7)	9,974 (64.0)	9,197 (61.2)	9,032 (59.9)	8,934 (60.7)	10,986 (67.0)	10,327 (65.5)
	하도급	2,884 (31.7)	4,080 (32.3)	5,622 (36.0)	5,841 (38.8)	6,059 (40.1)	5,785 (39.3)	5,405 (33.0)	5,432 (34.5)
	합계	9,112 (100.0)	12,632 (100.0)	15,596 (100.0)	15,038 (100.0)	15,091 (100.0)	14,719 (100.0)	16,391 (100.0)	15,759 (100.0)
계약 금액	원도급	1,965 (28.8)	2,639 (33.5)	2,260 (24.9)	2,502 (23.0)	2,765 (20.8)	2,981 (22.2)	3,192 (24.1)	3,016 (23.1)
	하도급	4,860 (71.2)	5,241 (66.5)	6,812 (75.1)	8,394 (77.0)	10,509 (79.2)	10,453 (77.8)	10,043 (75.9)	10,056 (76.9)
	합계	6,825	7,880	9,071	10,895	13,274	13,434	13,234	13,072

주 : ()는 비중.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5)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대전지역에서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총 1,292건의 계약실적 중에서 1억미만 계약건수가 483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여 소규모 건설계약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1억~5억미만 계약건수가 360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어 5억 미만의 소액 건설계약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5억~10억미만이 155건(12.0%), 10억~30억미만이 184건(14.2%)를 차지하여 중소규모의 건설계약건수는 전체의 26.2%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30억이상의 중대형급 건설계약건수는 모두 110건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계약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2006년을 제외하면, 1억미만 계약건수는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전지역 건설업에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억이상 중급 건설공사 및 대형 건설공사의 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투자

로 중대형 건설 계약건수가 늘어나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부분적으로는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로부터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3> 대전지역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추이

(단위 : 건, %)

구분	합계	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500억 미만	500억 이상	
2000	건수 (비중)	1,012 (100.0)	391 (38.6)	305 (30.1)	125 (12.4)	124 (12.3)	31 (3.1)	15 (1.5)	20 (2.0)	1 (0.1)
2001	건수 (비중)	1,548 (100.0)	508 (32.8)	505 (32.6)	241 (15.6)	201 (13.0)	36 (2.3)	28 (1.8)	27 (1.7)	2 (0.1)
2002	건수 (비중)	1,789 (100.0)	555 (31.0)	573 (32.0)	289 (16.2)	274 (15.3)	38 (2.1)	32 (1.8)	23 (1.3)	5 (0.3)
2003	건수 (비중)	1,742 (100.0)	599 (34.4)	518 (29.7)	263 (15.1)	222 (12.7)	51 (2.9)	39 (2.2)	43 (2.5)	7 (0.4)
2004	건수 (비중)	1,556 (100.0)	675 (43.4)	421 (27.1)	171 (11.0)	204 (13.1)	33 (2.1)	23 (1.5)	27 (1.7)	2 (0.1)
2005	건수 (비중)	1,671 (100.0)	726 (43.4)	387 (23.2)	191 (11.4)	240 (14.4)	52 (3.1)	36 (2.2)	30 (1.8)	9 (0.5)
2006	건수 (비중)	1,292 (100.0)	483 (37.4)	360 (27.9)	155 (12.0)	184 (14.2)	45 (3.5)	38 (2.9)	19 (1.5)	8 (0.6)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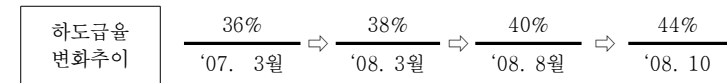
5) 지역업체 참여

2008년도 91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조사개요는 91개 사업에 대한 원도급 총계약액은 4조 2,249억원이며 공공공사는 70억원이상이며 민간공사는 연면적 10,000㎡이상이다.

우선 원도급 참여율을 보면, 2008년도 원도급 전체로는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17.4%로 전년보다 0.7%p 높아졌다. 공공부문에서는 참여율이 16.1%로 전년보다 0.1%p, 민간부문에서는 참여율이 18.1%로 전년보다 1.1%p 각각 높아졌다.

하도급 참여율은 2008년도 전체로는 43.8%로 전년보다 5.8%p 높아졌으며, 원도급 참여율보다 매우 높으며 참여율도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33.5%로 전년보다 2.4%p 참여율이 낮아졌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참여율이 50.7%로 전년보다 11.7%p 대폭 상승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원·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 3월 3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10월에는 44%로 신장되었다.



<표 2-24> 대전지역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계	원도급	참여율	계	원도급	참여율
계	38,102	6,363	16.7	42,249	7,333	17.4
공공부문	13,160	2,133	16.0	16,413	2,650	16.1
민간부문	24,942	4,230	17.0	25,836	4,682	18.1

자료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구분	2007년			2008년		
	계	하도급	참여율	계	하도급	참여율
계	15,119	5,749	38.0	17,257	7,552	43.8
공공부문	4,788	1,719	35.9	6,936	2,325	33.5
민간부문	10,331	4,029	39.0	10,320	5,227	50.7

자료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제3절 대전지역 건설업체 현황

1. 개관

1) 업체수

(1) 건설업체수 현황

대전지역의 건설관련업체 현황을 보면 2008년말 현재 총 1,744개 업체가 2,401개 업종에서 건설활동 중이다. 이 중에서 일반건설업체는 199개 업체가 220개 업종에서,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808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건설관련 업체로 설비건설업은 188개 업체, 열관리시공업체는 446개 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103개 업체가 각각 건설활동 중에 있다.

<표 2-25> 대전지역 건설업체 현황(2008.12.31)

(단위: 개)

구 분	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열관리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업 체	1,744	199	808	188	446	103
업 종	2,401	220	1,207	197	674	103

자료: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2) 건설업체수 변화추이

대전지역의 건설업체수는³⁾ 1999년 종합건설업체 9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 801개 업체, 총 896개 업체로 전국의 2.6% 수준에서 2006년 종합건설업체 206개 업체, 전문건설업체 972개 업체로 전국의 2.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수는 증가하였지만, 전국의 증가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본 자료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이므로 앞의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의 등록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체수와 차이가 있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까지 모두 포괄된다.

또한 전체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체수 비중은 1999년 10.6%에서 2006년 17.5%로 종합건설업체수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종합건설업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수 비중은 1999년 89.4%에서 2006년 82.5%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전문건설업체수는 완만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종합건설업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대전지역 건설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개,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전	종합	95 (10.6)	150 (15.4)	256 (21.3)	251 (21.8)	262 (21.9)	271 (22.7)	239 (19.0)	206 (17.5)
	전문	801 (89.4)	822 (84.6)	944 (78.7)	903 (78.2)	932 (78.1)	924 (77.3)	1,016 (81.0)	972 (82.5)
	합계	896 (100.0)	972 (100.0)	1,200 (100.0)	1,154 (100.0)	1,194 (100.0)	1,195 (100.0)	1,255 (100.0)	1,178 (100.0)
전국	종합	5,144 (14.8)	7,975 (20.3)	11,961 (25.3)	12,634 (25.9)	12,996 (25.9)	12,988 (25.6)	13,202 (24.3)	12,914 (23.5)
	전문	29,704 (85.2)	31,267 (79.7)	35,225 (74.7)	36,144 (74.1)	37,120 (74.1)	37,664 (74.4)	41,052 (75.7)	42,106 (76.5)
	합계	34,848 (100.0)	39,242 (100.0)	47,186 (100.0)	48,778 (100.0)	50,116 (100.0)	50,652 (100.0)	54,254 (100.0)	55,020 (100.0)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 규모 및 기업형태

(1) 건설업 종업원 규모별

대전지역 건설업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보면, 2007년말 현재 전산업 대비 건설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2.8%, 종사자수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내 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에서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비중은 건설업 전체의 79.7%, 종사자수 비중은 3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 중견

업체 비중은 0.4%에 불과하여 대전지역에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매우 많고 또한 그 만큼 영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인 이상 중소기업도 이상 업체 비중도 6.6%에 불과하며,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 비중이 절반을 초과하는 58.5%에 달하고 있어 대전지역 건설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표 2-27> 대전지역 건설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단위 : 개, 명, %)

구 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대비 비중	건설업내 비중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대비 비중	건설업내 비중
계	88,907	2,475	2.8	100.0	423,702	19,006	4.5	100.0
1 - 4명	75,141	1,449	1.9	58.5	131,983	3,043	2.3	16.0
5 - 9명	7,939	525	6.6	21.2	50,269	3,453	6.9	18.2
10 - 19명	3,201	335	10.5	13.5	42,206	4,504	10.7	23.7
20 - 49명	1,661	127	7.6	5.1	49,766	3,570	7.2	18.8
50 - 99명	595	28	4.7	1.1	40,665	1,840	4.5	9.7
100 - 299명	277	9	3.2	0.4	44,497	1,418	3.2	7.5
300 - 499명	40	1	2.5	0.0	15,273	302	2.0	1.6
500 - 999명	39	1	2.6	0.0	26,604	876	3.3	4.6
1000명이상	14	0	0.0	0.0	22,439	0	0.0	0.0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 기업 조직형태별

건설업체의 조직형태별로는 회사업인이 전산업대비 16.6%로 많은 편이고, 건설업 내에서는 회사업인이 절반정도인 50.7%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체가 48.9%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지역은 개인사업체보다는 회사법인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업체의 전국평균 비중은 약 45%이고, 개인사업체의 전국평균 비중은 54%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보다는 법인사업체 비중이 높고 개인사업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사자는 회사법인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전산업대비 11.0%로 법인사업체 비중 16.0%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내에서의 법인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82.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개인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16.7%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사업체가 그 만큼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28> 대전지역 건설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단위 : 개, 명, %)

조직형태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대비 비중	건설업내 비중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대비 비중	건설업내 비중
계	88,907	2,475	2.8	100.0	423,702	19,006	4.5	100.0
개인사업체	75,788	1,211	1.6	48.9	173,764	3,173	1.8	16.7
회사법인	7,839	1,256	16.0	50.7	141,206	15,590	11.0	82.0
회사이외의법인	2,462	3	0.1	0.1	98,042	185	0.2	1.0
비법인단체	2,818	5	0.2	0.2	10,690	58	0.5	0.3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3) 종사자 지위별

건설업체에서 종사하는 지위별로는 2007년 현재 건설업 전체로는 상용종사자가 66.1%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건설업 특성상 일일 및 임시종사자수도 22.6%로 많은 점이 확인된다.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7.9% 수준이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종사자 지위별 분포를 보면, 종합건설업의 상용종사자가 77.8%로 전문건설업의 61.2%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보다는 규모가 대형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용종사자가 많은 경향이 있다. 반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전문건설업에서 10.4%이고 종합건설업에서는 1.8%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건설업에서 무급종사자가 4.9%로 종합건설업의 0.1%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들은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가족중심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일 및 임시종사자수 비중은 종합건설업 20.3%, 전문건설업 23.3%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2-29>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종사자지위별 종사자수(2007)
(단위: 명, %)

종사자지위	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합계	19,006	100.0	5,576	100.0	13,430	100.0
자영업주,무급가족	1,500	7.9	103	1.8	1,397	10.4
상용종사자	12,560	66.1	4,336	77.8	8,224	61.2
일일 및 임시종사자	4,289	22.6	1,133	20.3	3,156	23.5
무급종사자	657	3.5	4	0.1	653	4.9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 산업세분류별 현황

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대전지역 건설업 중 종합건설업 사업체수는 전국대비 2.7%이고 종사자수는 2.1% 수준이며, 전문공사업 사업체수는 2.7%, 종사자수는 2.3%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종합건설업내 세부업종별로는 토목건설업 사업체가 대전지역 건설업 중에서 10.1%로 건물건설업의 9.5%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종사자수 비중은 건물건설업이 18.0%로 11.4%인 토목건설업 종사자수 비중보다 높다. 건물건설업체는 토목건설업체수보다 적지만 종사자수는 토목건설업체보다 많다.

전문공사업에서는 실내건축·건축사무리공사업체가 835개로 건설업 전체의 33.7%를 차지하여 대전지역 건설업체 중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수는 2,490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종사자수는 적은 편이다. 이어서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가 440개 업체로 건설업 전체의 17.8%

이고 종사자는 2,357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하여 역시 상대적으로 종사자수가 적은 편이다.

반대로 전기·통신공사업은 종사자가 4,229명으로 건설업 전체의 2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사업체수는 345개로 전체의 13.9%에 불과하고, 종사자가 3,005명으로 건설업 전체의 15.8% 수준으로 많은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사업체가 279개로 건설업 전체의 11.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체수가 적은 편이다.

<표 2-30> 대전지역 건설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
(단위: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전국	대전	전국 비중	산업내 비중	전국	대전	전국 비중	산업내 비중
건설업	92,531	2,475	2.7	100.0	847,713	19,006	2.2	100.0
종합건설업	17,815	485	2.7	19.6	269,475	5,576	2.1	29.3
건물건설업	8,946	234	2.6	9.5	140,025	3,413	2.4	18.0
토목건설업	8,869	251	2.8	10.1	129,450	2,163	1.7	11.4
전문공사업	74,716	1,990	2.7	80.4	578,238	13,430	2.3	70.7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5,758	279	1.8	11.3	204,009	3,005	1.5	15.8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4,993	440	2.9	17.8	77,979	2,357	3.0	12.4
전기·통신 공사업	11,624	345	3.0	13.9	133,633	4,229	3.2	22.3
실내건축·건축사무리 공사업	25,975	835	3.2	33.7	126,659	2,490	2.3	15.5
건설장비 운영업	6,366	91	1.4	3.7	35,958	899	2.5	4.7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 연도별 변화추이

(1) 사업체수 변화추이

대전지역 건설업의 세부 업종별 사업체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업은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전문공사업체는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 세부업종별로는 토목건설업과 건물건설업 모두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건설업체가 토목건설업체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편이다.

전문공사업 세부업종별로는 실내건축·건축사무리 공사업체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여 2007년 현재 전문공사업 중 가장 많은 업체가 활동 중에 있다. 이어서 전기·통신공사업체도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다. 다만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2000년 421개 업체에서 2007년 440개 업체로 많아졌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체는 2005년 315개 업체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대폭 격감한 이후 2007년 들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31> 대전지역 건설업 세부업종별 사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 개, %)

산업세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설업	1,795	2,046	1,065	1,126	2,315	2,349	2,324	2,475
종합건설업	376	468	324	327	466	481	466	485
토목건설업	200	206	146	151	225	240	236	234
건물건설업	176	262	178	176	241	241	230	251
전문공사업	1,419	1,578	741	799	1,849	1,868	1,858	1,990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240	291	251	247	298	319	269	279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1	470	136	142	437	452	438	440
전기·통신 공사업	290	306	219	243	345	344	344	345
실내건축·건축사무리 공사업	396	442	113	146	668	660	719	835
건설장비 운영업	72	69	22	21	101	93	88	91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2) 종사자수 변화추이

대전지역 건설업의 세부 업종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를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2000년 5,462명에서 2007년 5,576명으로 증가하는 하였지만 매우 완만한 증가세이며,

반면, 전문공사업 종사자는 2000년 9,946명에서 2007년 13,430명으로 종합건설업 종사자보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업 세부업종별로는 토목건설업 종사 근로자수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건설업의 경우는 2003년까지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지만, 이후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문공사업 세부업종별로는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의 종사자가 2000년 2,811명에서 2006년 4,928명에 이르기까지 전문공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07년 들어 약 2,000명이 급감하였다. 실내건축·건축사무리 공사업체의 종사자는 빠르고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통신공사업의 종사자도 2006년까지 빠르고 많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 들어 종사자수가 감소하였다. 건설장비 운영업 종사자는 증가 규모는 작지만 전문공사업 중 가장 빠른 배수로 종사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2007년 들어 종사자수가 감소하였다. 기타 전문공사업의 다른 업종들도 대체로 2006년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2> 대전지역 건설업의 세부업종별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개, %)

산업세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설업	15,408	16,364	14,416	15,426	18,607	18,391	21,272	19,006
종합건설업	5,462	6,119	5,222	6,046	6,115	4,976	5,599	5,576
토목건설업	2,924	2,895	1,920	1,996	2,389	2,340	2,322	3,413
건물건설업	2,538	3,224	3,302	4,050	3,726	2,636	3,277	2,163
전문공사업	9,946	10,245	9,194	9,380	12,492	13,415	15,673	13,430
기반조성·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2,811	2,866	3,663	3,271	3,272	3,590	4,928	3,005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842	2,153	1,269	1,528	2,061	2,409	2,469	2,357
전기·통신 공사업	3,044	3,060	2,826	3,046	3,602	4,165	4,450	4,229
실내건축·건축사무리 공사업	1,768	1,729	1,281	1,245	2,466	2,574	2,764	2,940
건설장비 운영업	481	437	155	290	1,091	677	1,062	899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

제4절 대전광역시 건설업 시책 및 성과

1. 2009년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1) 종합대책의 추진 방향

대전광역시의 2009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민·관 및 지역내 유관기관들의 대형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회복의 가시적 성과 거양
- 공사 발주부서·건설협회·건설업체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구축으로 양극화 해소의 기틀 마련
- 건설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 등록기준 강화 및 효율적인 건설업체 관리로 경쟁력 제고

2) 종합대책의 내용(2009)

(1) 지역건설경기 부양

-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대책 추진
- 2009년 추경 및 2010년 국비 확보 전력
- 지방채 발행 확대 : 총 1,059억원 규모 (2008년 대비 367억원 증가)
- 녹색 뉴딜사업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

(2)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 ① 효율적인 업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육성 관리

- 건설업계와의 소통창구 운영
- 지역건설자재 전시회 개최
- 공사용 자재 관급 설계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 및 실무팀 운영

②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

- 지방자치단체 공사 분할계약 확대
- 건설공사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
- 시민홍보 철저히 참여분위기 확산

③ 공공사업 단계별 참여방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범위
 - 국가기관 50억원~76억원미만, 정부투자기관 50억원이상~229억미만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예규 : 지역업체 비율 30% 범위내)
 - 광역자치단체 예정가격 70억원이상~222억원미만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예규 : 지역업체 비율 40%이상)
 - 예정가격 222억원이상~국제입찰대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불가 (지방계약법 5조)
 - * 지방공사에서 발주할 경우 국제입찰에서 제외 (49% 가능)

목표	$\frac{\text{국내입찰}(222\text{억미만})}{\text{공동도급 } 49\% \text{ 이상 의무}} \Rightarrow \frac{\text{국제입찰}(222\text{억미만})}{\text{공동도급 } 49\% \text{ 이상 권고}} \Rightarrow \frac{\text{하도급}}{\text{대상금액 } 80\% \text{ 이상 권고}}$
----	--

④ 민간사업 단계별 참여방안

목표	$\frac{\text{원도급}}{\text{공동도급 } 49\% \text{ 이상 요청}} \Rightarrow \frac{\text{MOU체결}}{10,000\text{m}^2 \text{ 이상 건축공사}} \Rightarrow \frac{\text{하도급(자재,인력,장비)}}{60\% \text{ 이상 참여 권고}}$
----	---

⑤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력 강화

- 각종사업 용적을 추가 부여
- 건설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우수 하도급 건설업체 포창
-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지역업체 참여방안 추진 담당공무원

⑥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

- 지역업체 참여실태 조사(평가)
 -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실태 조사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자치구 평가
- ⑦ 상생협력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 건설단체협의회 활성화 대책
 -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건설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2. 2009년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성과

1) 지역건설경기 부양

(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MOU, 분할발주, 지역제한 공동도급으로 지역 참여 확대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구 간 : 대덕구 오정동~동구 판암동 I.C(L=6.7km) / '08~2014 • 규모 : 3개분야 54공구 / 4,997억원 • 수탁사업비 : 1,800억원 ('08 : 110억원, '09 : 868억원 / 27공구발주) ※ 입찰잔액(450억원 예상), 입찰완료후 재사용토록 관계기관협의
----------	--

(2) 도안신도시 지구외 간선시설사업

- 광역기반시설공사를 토지구택공사와 업무분담을 통한 지역참여 확대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토지구택공사), 발주(대전도시공사),시공(토지구택공사) • 규모 : 계룡로우회도로, 상수도 인입관로, 하수도압송관로 • 총사업비 2,450억원 중 / 1,750억원 지역업체 수주예상
----------	--

(3) 갑천1지구 하천정비 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대전지방축토관리청 위탁받아 지역참여 확대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 대전국토관리청 (12월 완료) • 규모 : 갑천(금강합류점 ~둔산대교) 11.7km / 자전거도로 20km등 • 총사업비 : 351억원
----------	--

(4) 실적공사비 상향 조정

-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품셈의 합리적으로 실적공사비 상향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주요 성과	일반건설공사	50억원이상	70억원 이상	'10. 1월 발주공사 적용
	전문건설공사	6억원 이상	6억원 이상	지역제한 대상 금액으로 변경 없음

2)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2009년도 대전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목표와 실적이 증가하였다.

구 분	'08년 실적	'09년 목표	'09년 실적	목표대비 증감
지역하도급률	38.0%	50%	47.5%	2.5%P↓
지역자재사용률	51.0%	60%	61.0%	1.0%P↑
지역장비사용률	75.0%	80%	75.0%	5.0%P↓

(1)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제공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지구 지역업체 20% 참여 / 공사비 3,000억원 중 600억원 효과 - 탄방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SK건설, 계룡건설 컨소시엄
----------	--

(2) 대형공사의 공동도급 및 분할발주

-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제한금액 이하로 분할발주(100억미만) 및 의무공동도급제한 적극 추진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도급 - 행복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등 16사업 / 2,651억원 • 분할발주 - 계백로 우회도로건설등 19사업 1,965억원
-------	---

(3) 대형공사의 지역협력업체 등록 지원

- 찾아가는 현장지도(2달 1회)로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까지 협력업체 등록 305업체 ⇒ '09 418업체 증가 (증113업체) • 관내현장에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요청 / 년2회 간담회
-------	--

(4) 찾아가는 현장지도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도모

- 상·하반기 정기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연2회)
- 외지업체 시공중인 대형건축공사(연면적 10,000㎡) 지역업체 참여실태 조사 (분기 1회)
⇒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시공사 대규모 시공사와 MOU 협약 체결로 상호 협력 강화(38건) • MOU 체결시 지역업체 60% 이상 참여 권고 • 건축 인·허가시 허가조건에 지역업체 60% 이상 참여 권고 		
		원도급참여율	하도급참여율
	2009	27.0%	47.5%
	2008	17.4%	43.8%
	증감	↑9.6%	↑ 3.7%

3)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1)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육성관리

-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등록기준 등에 미달되는 업체를 건설협회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 진입 및 활동 제한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 등록말소 5 영업정지 20 과태료처분 16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 등록말소 40 영업정지 25 과태료처분 40
-------	---

(2) 건설관련 정보 제공

- 지역건설업체에 건설동향, 해외기술정보, 건설관련 위원회 개최 등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업체 권익 보호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정보지 발간 : 2008년 1~ 현재 월간지 발간 / 홈페이지 게시 • 지역자재 생산업체 책자발간 : 500부 (홈페이지 게재) • 지역건설자재 전시회 개최 (2009. 7. 16 - 19 DCC / 25업체 참여) ※ 건설현장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 및 지역자재품질관리개선도모
-------	---

(3) 우수 건설업체 표창 및 자치구 평가

- 지역건설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건설발전 유공 표창 / 17업체 일반 3 전문 10 설비2 • 지역경제활성화 “우수향토기업”공로 / 계룡건설, 금성백조 (5.12) • 지역건설하도급우수업체 및 기관표창 : 10 업체 • 지역건설발전 우수공무원 표창 / 3명(시1, 구2) • 지역건설발전 최우수자치구 선정 / 최우수 : 인센티브 (5천만원)
-------	--

(4)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007년 이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5차례에 걸친 개정 건의를 한 결과 개선이 이루어 짐.

-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기준상향 : 지방 및 국가계약법규 개정 ('09. 3월)
 - 국가, 공공기관 : 일반공사 50억원 ⇒ 76억원(공공기관 150억원)
 - 지자체 : 일반공사 70억원 ⇒ 100억원(전문 6억원 ⇒7억원)
- 철사업체참여제한 입찰조건개선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개정('09.4월)
 - 입찰공고일전일 :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 해당소재지, 등록입찰자격

제 3 장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제3절 지역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제4절 지역 건설업 상생협력 관련 실태 및 문제점

제 3 장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지역 소재 건설업,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관련 개선방안과 건설업 내부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실태 및 전망을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 건설경기 및 경영상태 전망, 경영에로사항(수주관련, 하도급관련 등)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수주관련, 하도급 관련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제도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제도를 조사하여 지역내 실태와 상호 연계하도록 하였다.

2. 설문조사 기획 및 주요 내용

1) 조사대상 사업체 및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의 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되었다. 또한 대전지역 2008년말 현재 등록 건설업체 1,7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설비건설, 열관리시공, 시설물유지관리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 설문지를 달리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종합건설업은 199개 업체 중에서 업종분야별로 규모별로 비례층화 표본추출에 의하여 총 49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전문건설업은 1,545개 업체 중에서 업종분야별

규모별로 비례층화 표본추출에 의하여 총 275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업체 중에서 설문에 응하는 업체만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의 주요 내용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대주제는 비슷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영상태 및 건설경기 전망 외에 건설업 제도관련,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및 방안, 대전광역시 역할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최근 도입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지역 중소건설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건설업 역업분리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건설산업간 상생협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제도관련 부문에서는 적격심사제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관련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하도급거래 부문에서는 하도급공사 수주관련, 계약,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제2절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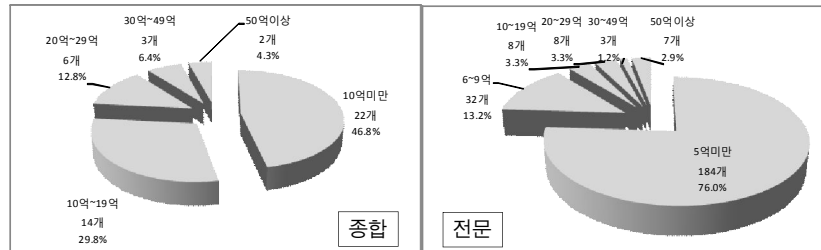
1. 자본금 및 종업원수

1) 자본금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 업체들의 현황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의 기업이 4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10억~19억인 기업들이 29.8%인 반면,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기업들은 4.3%에 불과하였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본금 5억 미만인 기업이 76.0%를 차지하여 소액규모 건설업체가 대부분이었고, 이어서 6억~9억인 기업이 13.2%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자본금이 소액인 기업이 주류를 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자본금이 50억 이상 기업이 조사대상업체 중 7개 업체로 종합건설업(2개 업체)보다 많은 점이 특이하다.⁴⁾

[그림 3-1] 조사대상업체의 자본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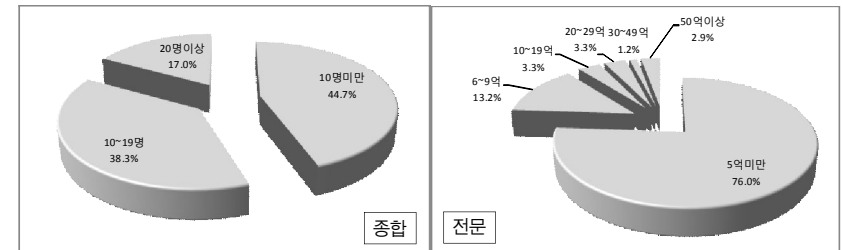
4) 조사대상업체 중 종합건설업의 경우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57억과 65억 두 기업으로 나타났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110억, 151억, 203억, 210억, 229억, 310억, 502억인 기업이 각각 조사되었다.

2) 종업원수

종업원수 분포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종업원수 10명 미만이 44.7%로 가장 많고 10~19명이 38.3%, 20명 이상이 17.0%를 차지하고 있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건설업체가 전체의 7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19명인 기업이 14.7%, 20명 이상인 기업이 5.5%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는 약 80%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아가 20명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94.5%에 달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조사대상업체의 종업원수 분포



3) 직접 시공비율과 지역 전문업체 우대비율

종합건설업체의 2008년 금액기준 직접시공비율은 40~60%미만인 업체가 37.5%로 가장 많았고,⁵⁾ 이어서 20~40%미만인 업체가 27.1%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 이상 직접 시공하는 업체도 14.6%로 나타났다. 기타 직접시공비율이 60~8%미만인 건설업체는 12.5%, 20%이내인 건설업체는 8.3%로 각각 나타났다.

5) 인천지역의 경우는 2005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이 20~40%가 가장 많았고, 40~60%미만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하면 대전지역은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비율이 대체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 직접 시공비율(종합건설)

(단위 : %)

직접시공비율	20% 이내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구성비	8.3 (4)	27.1 (13)	37.5 (18)	12.5 (6)	14.6 (7)

주 : 2008년 금액기준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우대하여 시공에 참여시키는 정도에 대해서는 60%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60%미만이 17.8%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은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를 우대하여 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

<표 3-2> 종합건설업체의 지역전문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종합건설)

(단위 : %)

직접시공비율	20% 이내	20~30% 미만	30~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구성비	6.7 (3)	2.2 (1)	8.9 (4)	17.8 (8)	64.4 (29)

주 : 2008년 금액기준

2.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비교

건설업체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4년)과 1년 전(2008년)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종합건설업은 5년 전과 1년 전보다 모두 현재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편이 근소하게 많았다. 특히 5년 전과 현재 경영상태를 비교했을 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는 반대로 5년 전과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편이 많았고 특히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6) 인천지역의 경우는 2005년 기준으로 지역전문업체를 우대하여 시공에 참여시키는 비율을 보면,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에 불과하였고, 40~60%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0%에 불과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현재 경영상태와 비교하여 5년 전보다는 1년 전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5년 전과 1년 전을 비교하면 대폭개선이 14%에서 6.4%로 -7.6%p 감소하였고 개선은 -0.4%p 감소하였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도 5년 전과 1년 전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면, 대폭개선은 8.9%에서 2.9%로 -6.0% 감소하였고 개선도 -5.2%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3> 5년 전과 1년 전 대비 경영상태 비교

(단위 : %, %p)

경영상태	종합건설			전문건설		
	5년전(2004)	1년전(2008)	변화	5년전(2004)	1년전(2008)	변화
대폭 개선	14.0	6.4	-7.6	8.9	2.9	-6.0
개선	30.2	29.8	-0.4	30.4	25.2	-5.2
변화 없음	25.6	29.8	4.2	19.2	31.1	11.9
악화	20.9	23.4	2.5	31.8	33.3	1.5
대폭 악화	9.3	10.6	1.3	9.8	7.8	-2.0

현재의 경영상태를 5년 전 및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영상태가 개선된 이유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경우 5년 전에 비해서는 모두 주로 전략수립,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에 의한 경영개선 노력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중소기업보호제도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를 원인으로 들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상태를 5년 전 및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유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5년 전이나 1년 전 모두 공사물량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 상승에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전문건설업체는 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심화를 경영상태 악화의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표 3-4> 경영상태 개선 이유

(단위 : %)

대목 개선 또는 개선된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증가	11.8	29.4	33.3	19.0
중소건설업보호제도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	5.9	47.1	6.0	10.1
경영개선 노력 (전략수립, 기술개발, 원가절감)	58.8	0	47.6	44.3
중점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23.5	23.5	10.7	24.1
기타	0.0	0.0	2.4	2.5

<표 3-5> 경영상태 악화 이유

(단위 : %)

대목 악화 또는 악화된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0.0	7.7	19.2	16.1
공사물량감소	58.3	46.2	43.8	40.2
경영 개선 노력의 부족	0.0	0.0	2.7	2.3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 상승	16.7	23.1	26.0	32.2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16.7	15.4	5.5	6.9
기타	8.3	7.7	2.7	2.3

2) 경영상태 전망

향후 경영상태 전망에 관해서는 2년 미만 단기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3년 이후 중장기의 경우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향후 2년의 단기보다도 3년 이후인 중장기

에 경영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 낙관하는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기로 갈수록 건설업의 경영상태는 더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6> 향후 경영상태 전망

(단위 : %)

		건설경기 전망	매우 낙관적	낙관적	변화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종합	2년 미만 단기	2.0 (1)	36.7 (18)	53.1 (26)	8.2 (4)	0.0 (0)	
	3년 이후 중장기	4.1 (2)	51.0 (25)	32.7 (16)	10.2 (5)	2.0 (1)	
전문	2년 미만 단기	2.2 (6)	42.5 (116)	35.9 (98)	17.6 (48)	1.8 (5)	
	3년 이후 중장기	4.8 (13)	48.0 (129)	30.5 (82)	14.5 (39)	2.2 (6)	

향후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2년 미만 단기적 그리고 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주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중점 사업분야의 전환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이어서 공사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표 3-7> 향후 경영상태 개선 전망 이유

(단위 : %)

대목 개선 또는 개선으로 전망하는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2년 미만	3년 이후	2년 미만	3년 이후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	35.3 (6)	31.6 (6)	50.4 (61)	23.3 (30)
중점 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35.3 (6)	26.3 (5)	21.5 (26)	26.4 (34)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선	0.0 (0)	15.8 (3)	5.8 (7)	3.9 (5)
공사 물량의 증가	17.6 (3)	26.3 (5)	15.7 (19)	29.5 (38)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 및 활성화	5.9 (1)	0.0 (0)	5.8 (7)	16.3 (21)
중소 건설업 보호제도의 증가	0.0 (0)	0.0 (0)	0.8 (1)	0.8 (1)
기타	5.9 (1)	0.0 (0)	0.0 (0)	(0)

반면, 향후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2년 미만의 단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빠른 시간에 회복되리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고,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 상승요인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퇴조와 공사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은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의 감소와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인한 공사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고, 전문건설업은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와 생산원가의 상승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표 3-8> 향후 경영상태 악화 전망 이유

(단위 : %)

대폭 악화 또는 악화로 전망하는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2년 미만	3년 이후	2년 미만	3년 이후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0.0 (0)	0.0 (0)	18.2 (8)	8.6 (3)
중소건설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공사 물량 확보 감소	0.0 (0)	33.3 (2)	18.2 (8)	17.1 (6)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이 요원함	60.0 (3)	16.7 (1)	13.6 (6)	11.4 (4)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	40.0 (2)	33.3 (2)	13.6 (6)	25.7 (9)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	0.0 (0)	16.7 (1)	27.3 (12)	25.7 (9)
기타	0.0 (0)	0.0 (0)	9.1 (4)	11.4 (4)

3. 자금사정 평가

1) 매출액 비교

5년 전과 1년 전 대비 매출액 증감을 분석해 보면, 우선 5년 전인 2004년과 비교

한 현재의 매출액 추세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20%이상 증가한 기업체가 28.2%인 반면, 20%이상 감소한 기업체가 23.1%로 상반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건설업도 ±5%내외의 증감을 경험한 업체가 가장 많지만, 역시 매출액이 20%이상 증가한 업체가 23.1%, 20%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22.1%에 달하여 종합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실적 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매출액 동향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28.3%로 가장 많으며, ±5% 내외로 변동이 거의 없다는 업체가 19.6%인 반면 20%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도 17.4%나 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5%내외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업체가 28.0%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는 대체로 기업별로 다양한 매출액 증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9> 5년 전과 1년 전 대비 매출액 비교

(단위 : %)

매출액의 변화		20%이상	10~29%	6~9%	±5%	6~9%	10~19%	20%이상
		증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종합	5년전(2004년)과 비교	28.2	5.1	10.3	17.9	5.1	10.3	23.1
	1년전(2008년)과 비교	17.4	8.7	10.9	19.6	4.3	10.9	28.3
전문	5년전(2004년)과 비교	23.1	14.6	8.5	19.6	4.5	7.5	22.1
	1년전(2008년)과 비교	11.1	10.3	12.6	28.0	11.1	13.8	13.0

2) 자금사정 상태(전문건설)

자금사정은 주로 대형업체들인 종합건설사보다는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업체들이 압박을 받는 경우 많다.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2008년) 대비 자금사정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슷하다는 입장을 보인 업체가 34.9%로 많지만, 대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금악화 되었다는 업체가 27.9%이고 크게 악화되었다는 업체도 19.5%에 달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업체가 모두 47.4%에 달하여 전문건설업체 절반 정도가 자금사정이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0> 전년도 대비 자금사정(전문건설)

(단위 : %)

구분	크게 개선	조금 개선	비슷	조금 악화	크게 악화
구성비	1.1 (3)	16.5 (45)	34.9 (95)	27.9 (76)	19.5 (53)

전년도(2008년)에 비해 자금사정이 개선 또는 악화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금사정 개선원인으로는 사업다각화 추진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건설 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한편,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사 수주물량의 감소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대금지급 지연도 자금사정 악화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표 3-11> 전년도 대비 자금사정 개선·악화 원인(전문건설)

(단위 : %)

자금사정 개선원인	지역건설 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경영개선노력 (기술개발, 원가절감)		사업다각화 추진	기타
		28.1 (16)		26.3 (15)		35.1 (20)
자금사정 악화원인	대출 곤란	어음할인 곤란	수주 감소	대금지급 지연	원도급자의 부도	기타
	4.6 (6)	0.0 (0)	60.3 (79)	17.6 (23)	8.4 (11)	9.2 (12)

3) 향후 건설경기 전망

향후의 건설경기 전망에 대하여, 2년 미만 단기적으로는 변화 없을 것이라 전망하는 업체도 많았지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업체가 낙관적이라 보는 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는 여전히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으며,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34.0%로 가장 많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도 28.7%로 나타나 낙관적 견해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전문건설업체의 상당수가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대전광역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추진이 적극 요구된다 하겠다.

<표 3-12> 향후 건설경기 전망

(단위 : %)

구분	건설경기 전망	매우 낙관적	낙관적	변화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종합	2년 미만 단기	2.0 (1)	12.2 (6)	38.8 (19)	42.9 (21)
3년 이후 중장기		2.0 (1)	30.6 (15)	22.4 (11)	42.9 (21)	2.0 (1)
전문	2년 미만 단기	2.2 (6)	21.0 (57)	40.8 (111)	33.8 (92)	2.2 (6)
	3년 이후 중장기	3.7 (10)	34.0 (91)	30.6 (82)	28.7 (77)	3.0 (8)

향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자. 향후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2년 미만의 단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일치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지역공사 물량 증가를 들었다. 그만큼 대전광역시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건설 수요의 창출을 통한 물량 증가와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강화에 의한 물량 증가,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망 등을 이유로 들었다.

3년 중장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타 신건설수요의 창출을 통한 물량 증가(전문건설업체),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강화로 인한 물량 증가(종합건설업체) 등도 향후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표 3-13> 향후 건설경기 낙관적 전망 이유

(단위 : %)

매우 낙관적 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2년 미만	3년 이후	2년 미만	3년 이후
신건설 수요의 창출을 통한 물량 증가	28.6 (2)	6.7 (1)	33.9 (21)	22.9 (22)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지역공사 물량 증가	42.9 (3)	13.3 (2)	32.3 (20)	16.7 (16)
중소건설업 보호제도의 강화로 인한 물량 증가	28.6 (2)	26.7 (4)	6.5 (4)	10.4 (10)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망	0.0 (0)	53.3 (8)	19.4 (12)	39.6 (38)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편	0.0 (0)	0.0 (0)	6.5 (4)	9.4 (9)
기타	0.0 (0)	0.0 (0)	1.6 (1)	1.0 (1)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2년 미만 단기적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요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종합건설업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원가상승, 전문건설업은 중소기업의 보호제도의 퇴조로 인한 공사물량의 감소를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표 3-14> 향후 건설경기 부정적 전망 이유

(단위 : %)

매우 부정 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종합건설		전문건설	
	2년 미만	3년 이후	2년 미만	3년 이후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 난망	50.0 (8)	33.3 (5)	33.9 (21)	22.9 (22)
중소건설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공사 물량 축소	18.8 (3)	46.7 (7)	32.3 (20)	16.7 (16)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6.3 (1)	0.0 (0)	6.5 (4)	10.4 (10)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	25.0 (4)	20.0 (3)	19.4 (12)	39.6 (38)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저조	0.0 (0)	0.0 (0)	6.5 (4)	9.4 (9)
기타	0.0 (0)	0.0 (0)	1.6 (1)	1.0 (1)

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종합건설업은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인한 공사물량의 감소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있

고 전문건설업은 원가상승요인을 들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 불투명을 들고 있다.

4. 경영 애로사항 및 극복과제

1) 경영 애로사항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공사물량의 부족을 각각 53.1%, 46.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업체의 거의 절반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이어 건설업체 모두 원가상승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기타 종합건설업은 비효율적 건설관련 규제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지적하였고, 전문건설업체는 경쟁의 심화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지적하는 기업이 많았다.

<표 3-15> 경영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제

(단위 : %)

경영애로사항	구성비		경영애로 극복 과제	구성비	
	종합	전문		종합	전문
인재 확보의 어려움	6.1 (3)	5.2 (14)	영업력 강화	35.4 (17)	29.6 (80)
공사 물량의 부족	53.1 (26)	46.7(126)	인재 육성	0.0 (0)	4.8 (13)
금융지원 제도의 미비	2.0 (1)	3.3 (9)	사업다각화 추진	29.2 (14)	24.1 (65)
기술개발의 여건 미비	0.0 (0)	1.1 (3)	경비 절감	16.7 (8)	23.0 (62)
경쟁의 심화	4.1 (2)	10.4 (28)	신기술·신공법 개발	2.1 (1)	8.1 (22)
원가 상승	12.2 (6)	21.1 (57)	인력 구조 조정	6.3 (3)	5.6 (15)
공사관련 민원의 증가	2.0 (1)	0.7 (2)	중점 사업 분야 변경	8.3 (4)	4.4 (12)
비효율적 건설관련 규제	12.2 (6)	3.3 (9)	기타	2.1 (1)	0.4 (1)
국가·지역 경제의 침체	8.2 (4)	7.8(21)			
기타	0.0 (0)	0.4 (1)			

2) 경영 애로요인 극복과제

이러한 경영상의 애로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영업력의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모든 건설업체가 모두 사업 다각화 추진과 경비절감 등을 경영상의 애로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제3절 지역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역 건설업체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1) 지역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의 영향 및 중요도

대전지역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지역 건설업체에 미친 영향을 보면, 첫째, 지방계약법⁷⁾의 제정 및 시행은 지역건설업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12.2%로 나타나 대체로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전체의 65.3%에 이르렀다. 반면, 지방계약법 제정 및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37.7%로 나타나 지방계약법의 시행이 실패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BTL(민간투자사업⁸⁾)의 확대는 건설업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6.5%,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0.4%로 나타나 전체의 91.8%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직접시공의무제도⁹⁾의 도입,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¹⁰⁾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¹¹⁾,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¹²⁾는 모두 지역 건설업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지방계약법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착시키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경제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법률로 개산계약제도 도입 등 계약절차 간소화,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계약의 투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8)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9) 직접시공의무제도는 30억 미만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도급공사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됨.

10)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내의 공사에 대해 입찰자격을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국가공사는 50억 미만, 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는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

1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미만 공사에 대해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12)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제도는 건설공사가 발주되는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

<표 3-16> 지역 중소기업 관련 정책·제도가 건설업체에 미친 영향(종합건설)
(단위 : %)

정책 및 제도	매우 긍정적	긍정적	영향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시행	0.0 (0)	37.7 (17)	53.1 (26)	12.2 (6)	0.0 (0)
BTL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	0.0 (0)	8.2 (4)	44.9 (22)	20.4 (10)	26.5 (13)
직접 시공의무제도의 도입	0.0 (0)	34.7 (17)	57.1 (28)	4.1 (2)	4.1 (2)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지자체) 확대	12.2 (6)	51.0 (25)	24.5 (12)	12.2 (6)	0.0 (0)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22.4 (11)	53.1 (26)	20.4 (10)	4.1 (2)	0.0 (0)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14.3 (7)	55.1 (27)	28.6 (14)	0.0 (0)	2.0 (1)

대전지역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중요도 평가를 보면, 무엇보다도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를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정책은 위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지역 건설업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들이다. 지역건설업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는 역시 정책·제도의 중요도에서도 최하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7> 지역 중소기업 관련 정책·제도의 중요도(종합건설)
(단위 : %)

정책 및 제도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가중합	최종순위
지방계약법의 제정 및 시행	5	3	13	5위
BTL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	4	1	9	6위
직접 시공의무제도의 도입	5	4	14	4위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지자체) 확대	18	8	44	1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10	14	34	2위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2	13	17	3위

2) 지역 중소기업 관련 정책·제도의 문제점(평가 포함)

(1)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정 및 시행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평가를 보자. 이 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의 증가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또한 이 법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발전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다.

한편, 이 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57.1%로 절반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과의 차별성이 미약하다는 견해, 지자체 재력 강화로 부조리가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다.

<표 3-18> 지방계약법 제정·시행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단위 :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발전	23.5(4)	국가계약법과 차별성 미약	28.6(2)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	5.9(1)	중소 건설업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57.1(4)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 증가	64.7(11)	지자체 재력 강화로 부조리 증가	14.3(1)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5.9(1)	지자체 계약 능력 부족으로 비현실적임	0.0(0)

(2) BTL 민간투자사업

BTL 민간투자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앞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는 점을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응답한 건설업체가 4건에 불과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는 업체의 절반이 넘는 58.3%가 중소기업체의 참여가 불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표 3-19> BTL 민간투자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단위 :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정부 재정 부담의 축소	50.0 (2)	중소 건설업체 물량 축소	16.7 (4)
연기금의 활용	0.0 (0)	중소 건설업체 참여 불리	58.3 (14)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0.0 (0)	수익성 저하	12.5 (3)
신규 건설시장 출현	50.0 (2)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12.5 (3)

(3) 직접시공의무제도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판단하는 업체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업체보다 많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는 성실업체의 성장을 촉진하고(31.6%),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26.3%)한다는 이유가 많았다. 반면 소수의견이지만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다.

<표 3-20>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단위 : %)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실업체 퇴출	26.3 (5)	공사비 증가	25.0 (1)
건설공사 품질 제고	10.5 (2)	경비의 증가	25.0 (1)
위장 직영 억제	15.8 (3)	현장 감독시 부조리 발생	0.0 (1)
성실업체 성장 촉진	31.6 (6)	인력 확보의 어려움	50.0 (2)
불법하도급 근절	15.8 (3)	기타	0.0 (0)

(4)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앞에서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지역건설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더욱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0.4%로 높게 파악되었다. 물론 현행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37.4%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단위 : 명, %)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의견	응답수	구성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더욱 하향 조정해야 한다.	29	60.4
현행제도가 적정하다.	18	37.5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	2.1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¹³⁾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¹⁴⁾란 대형업체와 중소기업간 기술보완 및 하도급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는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분야의 시공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어 일부 민간공사에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즉, 일선 발주부서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공공사에는 미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가 하도급을 강요할 경우, 하도급에 의존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저가 하도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채산성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의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13) 이 부분은 김번욱·강운산의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인천발전연구원, 2006)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음.

14)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자로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 시공하는 제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민간공사에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8.8%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3-22>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평가(종합건설) (단위 : %)

항 목	상생에 기여하는바가 큼	상생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모르겠음
구성비	18.8 (9)	12.5 (6)	68.8 (33)

2. 입찰 관련 제도

입찰과 관련한 제도들, 특히 입찰참가자자격사전심사(PQ)제도, 등급별 입찰제도¹⁵⁾, 최저가낙찰제, 자격심사기준 등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부적격업체를 사전에 배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별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쉽게 통과하는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¹⁶⁾.

1) 적격심사제도

현행 PQ심사제도는 변별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 PQ심사 점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낙찰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PQ심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15) 등급별 입찰제이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토록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6)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93쪽.

있는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는 공동도급을 통한 가산점이 인정되어 만점을 받게 되더라도, 신인도에서 불과 1~2점의 감점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어 신인도 점수 때문에 공공공사 추수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실적 및 외형위주의 평가로 경직되어 있어 중소기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¹⁷⁾.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바라본 적격심사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공업체 선정에 기여하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9.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PQ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다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존속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적절한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 현행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종합건설) (단위 : %)

구 분	운찰제이므로 폐지가 타당	가장 적절한 시공업체 선정에 기여하므로 존속 필요	기타
구성비	16.3 (8)	79.6 (39)	4.1 (2)

2) 등급별 입찰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공사는 최저가낙찰제도 외에는 모두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PQ심사기준이나 점수가 적격심사제도에도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PQ제도의 문제점은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비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나, 절반 이상의 업체들은 취지는 좋으나 개선이 필요하고 등급이 더욱 증가해야하고(18.8%), 시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14.6%) 하위업체가 상위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문제점이 상존한다

17)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95쪽.

(14.6%)고 지적하고 있다.

<표 3-24>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종합건설)

(단위 : 명, %)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의견	응답수	구성비
이전에 비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 취지는 좋으나 개선 필요, 등급이 더욱 증가해야 함.	22	45.8
시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9	18.8
하위업체가 상위업체와 공동등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문제점 상존	8	16.7
기타	7	14.6
	2	4.2

등급별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등급별 입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 및 기준의 선정이 필요하고 등급별 심사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미비라고 응답한 건설업체가 각각 33.3%로 가장 많았으며, 시행여건상의 문제로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역할분담의 미비를 지적하는 업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5> 등급별 입찰제도의 문제점(종합건설)

(단위 : 명, %)

등급별 입찰제도의 문제점	응답수	구성비
시행여건상의 문제 :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역할분담 미비	4	22.2
등급별 심사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Guide Line의 미비	6	33.3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미비	0	0.0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 및 기준의 선정	6	33.3
기타	2	11.1

3) 최저가낙찰제

정부는 2006년부터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건

설업체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종합건설업체가 55.1%로 절반을 초과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6> 현행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평가(종합건설)

(단위 : %)

구 분	찬성	반대	의견 없음
구성비	10.2 (5)	55.1 (27)	34.7 (17)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업체간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타 소수의견으로 건설업체 이익률 저하,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활동 저해,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 증대 등을 들고 있다.

<표 3-27>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성·반대 이유(종합건설)

(단위 : %)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	
건설업체의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	33.3 (2)	건설업체 이익률 저하	7.4 (2)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	0.0 (0)	업체간 과당경쟁·덤핑수주로 부실공사 우려	77.8 (21)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50.0 (3)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활동 저해	7.4 (2)
	16.7 (1)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 증대	7.4 (2)

3. 하도급 관련 제도

하도급 관련 제도상에도 다양한 문제점, 특히 엄격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요건, 이중계약 등 불공정거래, 하도급 저가심사의 문제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비실효성, 자금결제 관행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에 대하여, 24.5%가 추가공사비 미반영을 가장 많은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어서 각각 16.8%의 건설업체가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불유보를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14.4%의 업체가 하도급물량의 급격한 축소를 지적하고 있고, 소수의 불만사항으로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와 과도한 어음 결제 비중,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등을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불만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28>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불만사항(전문건설)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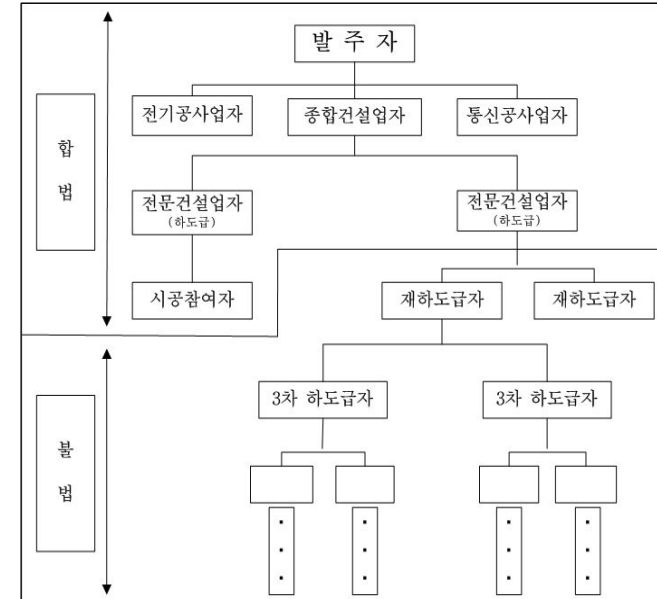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불만사항	응답수	구성비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조항 강요	33	8.2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	68	16.8
추가 공사비 미반영	99	24.5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불유보	68	16.8
과다한 어음결제 비중	27	6.7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26	6.4
하도급물량의 급격한 축소	58	14.4
어음할인료 미지급	10	2.5
커미션, 접대 등 요구	9	2.2
기타	6	1.5
합계	404	100.0

1) 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

하도급과 관련하여 우선 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한 법규가 실시되고 있다. 우선 하도급 적용대상 요건을 보면,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리업체로서 중소기업에게 위탁한 자 혹은 중소기업자로서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

자보다 규모가 2배 이상인자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건설업체들은 원사업자가 될 수 없는 관계로 하도급거래가 설립된다 할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3]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원·하도급구조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업무편람, 2006.3. p.107에서 재인용

(1) 전문·일반 건설업종 중복 보유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업종 중복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중복 보유(겸업)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한 적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5%, 88.9%로 나타나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종합·전문건설업 겸업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건설업체의 겸업보다는 종합건설업체에서 겸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29>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여부
(단위: 명, %)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여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중복 보유하고 있다(겸업하고 있다).	22.4 (11)	4.1 (11)
중복 보유한 적이 있다(겸업한 적이 있다).	4.1 (2)	7.0 (19)
중복 보유하고 있지 않다(겸업하고 있지 않고, 한적도 없다)	73.5 (36)	88.9 (241)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종합·전문건설업 중복 보유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복 보유 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문공사 발주물량이 적고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해서 중복 보유한다는 의견도 23.1%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표 3-30>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이유
(단위: 명, %)

종합·전문건설업 중복보유(겸업) 이유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문공사 발주물량이 적고,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해서	23.1 (3)	40.0 (10)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복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15.4 (2)	28.0 (7)
전문건설업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7.7 (1)	16.0 (4)
건설공사 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53.8 (7)	16.0 (4)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사유와는 다르게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문공사 발주물량이 적고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해서 중복 보유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복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가 28.0%,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전문건설

업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복 보유한다는 의견이 각각 16.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효과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선 건설업역 겸업철폐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먼저 건설 산업 구조개편이 2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부실 건설업체 퇴출,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을 각각 21.3%가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이지만 업역 확대에 인한 수익 증대와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을 긍정적 효과로 꼽기도 하였다.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부정적 효과로는 업종별 전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쟁의 심화(18.8%), 하도급업체 전락(16.7%), 수익의 감소(12.5%),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저하(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31>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종합건설)
(단위: %)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긍정적 효과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부정적 효과	
건설산업 구조 개편	25.5 (12)	경쟁의 심화	18.8 (9)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	14.9 (7)	업종별 전문화 불가능	39.6 (19)
부실 건설업체 퇴출	21.3 (10)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저하	10.4 (5)
업역 확대에 인한 수익 증대	17.0 (8)	하도급업체 전락	16.7 (8)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21.3 (10)	수익의 감소	12.5 (6)
기타	0.0 (0)	기타	2.1 (1)

2) 이중계약 등 불공정 거래

(1) 불공정계약조항 설정 사례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해 불공정계약조항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에 대해 없었다는 응답이 74.1%로 있었다는 응답 25.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대전지역은 대체로 불공정계약조항 설정사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불공정계약조항 설정사례가 25.9%라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32>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계약조항 설정사례 유무 여부(전문건설)
(단위 : %)

항 목	있었다.	없었다.
구성비	25.9 (64)	74.1 (183)

불공정계약조항을 설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해당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물가변동(상승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사례가 35.7%로 가장 많았고,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발생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사례가 31.0%로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이 외에 민원발생시 하도급자 처리부담으로 하는 일방적 조항 신설 사례(19.4%), 4대 보험료를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는 일방적 조항 신설 사례(14.0%)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3> 불공정계약조항 내용(전문건설)
(단위 : 명, %)

불공정계약조항 내용	응답수	구성비
물가변동(상승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46	35.7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발생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40	31.0
민원발생시 하도급자 처리부담으로 하는 일방적 조항 신설	25	19.4
4대 보험료를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는 일방적 조항 신설	18	14.0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추후공사가 지속적인 공사발주를 약속한다는 사례가 52.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 견적을 보여준다는 사례가 21.9%,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15.5%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사례(전문건설)
(단위 : 명,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사례	응답수	구성비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보여줌	41	21.9
대금 결제조건이 우대 약속	18	9.6
추후공사가 지속적인 공사발주의 약속	99	52.9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	29	15.5

(2) 이증계약 관련

원도급자로부터 이증계약서 작성을 요구받는 사례에 대하여는 없었다는 건설업체가 74.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간혹 있었다는 사례(22.2%)와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례(2.9%)도 전체의 25.1%에 달하고 있어 아직도 불공정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5> 이증계약서 작성 요구 사례(전문건설)
(단위 : %)

이증계약서 작성 요구 사례	간혹 있었다	빈번하게 있었다.	없었다.
구성비	22.2 (54)	2.9 (7)	74.9 (182)

이증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 그것이 전체 하도급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5.4%로서 비중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30%라고 응답한 기업이 32.3%, 50~70% 및 7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3.1%였다.

<표 3-36> 이중계약이 전체 하도급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전문건설)
(단위 : %)

차지 비중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구성비	55.4 (36)	32.3 (21)	6.2 (4)	3.1 (2)	3.1 (2)

이중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면, 그 위장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하도급계약 금액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37> 이중계약 위장 내용(전문건설)
(단위 : %)

하도급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 명의	하도급계약서상 일반적 조항	기타
84.9 (62)	2.7 (2)	8.2 (6)	4.1 (3)

또한, 이중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면, 실제 하도급계약 금액과 위장계약 금액의 차이가 실제 하도급계약 금액의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 10~30% 미만이라고 응답한 건설업체가 60.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8.7%인 반면, 70~9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8> 실제하도급계약과 위장계약 금액 차이(전문건설)
(단위 : %)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18.7 (12)	60.9 (39)	7.8 (5)	1.6 (1)	9.4 (6)	1.6 (1)

3)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는 1천억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로 설계금액의 85% 이상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우선

적 선택권을 이용하여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거나 최저가 입찰에 의한 하도급자 선정으로 직접공사비 미만의 초저가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⁸⁾.

저가 하도급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공사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38.9%가 경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23.9%가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결정하고, 21.4%가 원도급사의 실행예산에 맞추어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39> 하도급공사 입찰금액 결정방식(전문건설)
(단위 : 명, %)

하도급공사 입찰금액 결정	응답수	구성비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58	23.0
원도급사의 요구로 실견적보다 일정비율을 낮추어서	37	14.7
원도급사의 실행예산에 맞추어서	54	21.4
경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98	38.9
기타	5	2.0

다른 한편, 실행가격 미만으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주된 방법으로 가장 많은 37.2%의 건설업체가 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수주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30.4%가 서류제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수주하고, 26.7%가 연고자를 통해 수준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40> 하도급공사 수주방법(전문건설)
(단위 : %)

수주방법	연고자를 통한 수주	일반경쟁입찰 (서류제출)	특수공법, 장비를 보유하여 독점 수주	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수주
구성비	26.7 (66)	30.4 (75)	5.7 (14)	37.2 (92)

18) 김번옥·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11~112쪽.

따라서 전체 중 30.4%의 건설업체 만이 서류제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실행가격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경험이 있는지와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경쟁자가 많아서 라고 응답한 기업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34.2%의 기업이 인건비, 장비유지 등 고정운영비 확보를 위해 실행가격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연고권 확보(10.1%), 원도급자의 강요(7.0%)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표 3-41> 실행가격 미만 저가 투찰의 주요 원인(전문건설)
(단위 : 명, %)

실행가격 미만 저가 투찰의 주요 원인	응답수	구성비
인건비, 장비유지 등 고정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68	34.2
경쟁자가 많아서	96	48.2
연고권 확보를 위하여	20	10.1
원도급자의 강요	14	7.0
만기 도래하는 어음 상환을 위하여	1	0.5

4) 자금 결제 관련 관행

(1) 높은 어음 결제 비중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비를 결제 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특히 결제기일 60일 이상 어음의 경우, 어음만기일까지 할인료를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하도급자에게 떠맡기는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자들은 자금운용에 큰 애로가 생기며, 결국 공사부실화는 물론 건설업체의 부실화까지 초래하게 된다¹⁹⁾.

19)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16쪽.

대전지역에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형태에서 이와 같은 실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공사대금 어음수령비율을 보면, 어음수령비율이 50~70%인 건설업체가 29.5%로 가장 많았고, 70~90%인 기업이 12.1%, 90% 이상인 기업이 4.0%로 나타나 어음수령비율이 50%이상인 건설업체는 총 45.6%에 달하고 있다.

<표 3-42> 하도급 공사대금 어음수령비율(전문건설)
(단위 : %)

수령비율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어음	6.7 (10)	27.5 (41)	20.1 (30)	29.5 (44)	12.1 (18)	4.0 (6)

또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할 때 어음 만기일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61~120일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1~60일이라는 기업은 3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이내는 5.7%에 불과하였고 150일 이상도 4.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43> 공사대금 수령 만기일(전문건설)
(단위 : %)

만기일	30일 이하	31~60일	61~120일	121~150일	150일 이상
구성비	5.7 (9)	38.9 (61)	43.3 (68)	7.6 (12)	4.5 (7)

하도급대금 수령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법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해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64.7%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끔 받는다는 기업은 26.2%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하였다.

<표 3-44>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지급 경험(전문건설)

(단위 : %)

지급 유무	대부분 지급 받는다	가끔 받는다	받은 적이 없다
구성비	9.1 (17)	26.2 (49)	64.7 (121)

(2) 공사대금의 대물 수령

여기에 더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이 아닌 대물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체 대부분인 79.2%가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대물로 수령한 건설업체도 20.8%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45>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경험 여부(전문건설)

(단위 : %)

대물수령 경험 여부	있다	없다
구성비	20.8 (51)	79.2 (194)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가까운 45.0%가 원도급자의 강요에 의하여, 그리고 11.7%가 발주자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령하였다고 응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원도급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전체의 35.0%에 불과하였고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 3-46>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이유(전문건설)

(단위 : 명, %)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이유	응답수	구성비
원도급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21	35.0
원도급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27	45.0
발주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7	11.7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0	0.0
기타	5	8.3

(3) 추가공사비 미수령 및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공사에도 적용을 받았는가에 대해 거의 받았다고 응답한 건설업체가 23.2%, 가끔 받았다는 업체가 33.2%로 나타나 전체의 56.4%가 하도급 공사에도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받은 적이 없다는 기업은 36.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7> 계약금액 조정 공사적용 여부(전문건설)

(단위 : %)

거의 받았다	가끔 받았다	받은 적이 없다	조정사실 통보를 못받는다
23.2 (21)	33.2 (27)	36.8 (7)	6.8 (5)

다른 한편, 추후 공사 후 추가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었다는 응답이 40.8%, 자주 있었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전체의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불과 16.8%에 그치고 있다. 결국 건설업체 절반 수준은 추후 공사 후 추가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도 31.5%가 가끔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2.4%는 자주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물론 절반수준인 47.2%가 거의 없거나 19.0%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고는 있다. 그러나 전체 건설업체의 33.9%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8> 추가공사비 수령 못한 경험 및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경험(전문건설)

(단위 : %)

추가공사비 미수령 및 부당 감액 경험 사유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추후 공사 후 추가공사비를 수령 못한 경험	5.6 (14)	40.8 (102)	36.8 (92)	16.8 (42)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	2.4 (6)	31.5 (78)	47.2 (117)	19.0 (47)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한 경험이 있었던 기업 중에서 감액형태를 파악한 결과,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감액당한 경우가 26.0%로 가장 많았고, 원도급자의 손해발생에 경미한 과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액당한 경우도 17.3%,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등 경비 등을 전가 받은 경우도 10.4%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 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원도급자에게 구매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형태,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감액당하는 형태,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 당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9>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형태(전문건설)

(단위 : 명, %)

	응답수	구성비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감액	45	26.0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15	8.7
원도급자의 손해발생에 경미한 과오로 일방적으로 감액	30	17.3
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원도급자에게 구매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	16	9.2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14	8.1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 감액	28	6.2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등 경비 등을 전가	18	10.4
기타	7	4.0
합계	173	100.0

제4절 지역 건설업 상생협력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건설산업 양극화 현상

1)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차이

건설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정도에 대해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생각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차이를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은 65.3%가 수주차이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고,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30.6%로 나타나 전체의 95.9%가 수주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차이를 45.7%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42.8%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88.5%가 수주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모두 수주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5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차이

(단위 : %)

수주차이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아주 적다
종합건설	65.3 (32)	30.6 (15)	0.0 (0)	2.0 (1)	2.0 (1)
전문건설	42.8 (115)	45.7 (123)	9.7 (26)	0.4 (1)	1.5 (4)

(2) 건설업체 양극화 정도 및 요인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 간, 종합건설업체 간, 전문건설업체 간의 양극화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종합건설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1> 건설업체 양극화 정도

(단위 : %)

양극화 정도	종합건설	전문건설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18.4 (9)	70.3 (182)
종합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79.6 (39)	15.4 (40)
전문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2.0 (1)	14.3 (37)

양극화가 심각한 요인별 순서를 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동일하게 건설업체간 수주 격차가 가장 심각하며, 이어서 수익격차, 기술격차, 임금격차 순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52> 양극화가 심각한 순서

심각성 요소	종합건설		전문건설	
	가중합	순위	가중합	순위
건설업체간 수주 격차	47.5	1	247.0	1
건설업체간 임금 격차	22.5	4	116.8	4
건설업체간 수익 격차	28.0	2	176.3	2
건설업체간 기술 격차	23.3	3	122.5	3

2) 건설산업 양극화의 원인 및 문제점

(1) 건설업체 양극화의 원인

건설산업 양극화에 끼치는 영향이 큰 원인으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영업력의 차이, 건설경기의 침체,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하락한 요인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영업력의 차이, 저가하도급, 건설경기 침체 순으로 양극화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영업력의 차이와 건설경기 침체 등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일치하

여 지적하고 있는 건설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3> 건설산업 양극화의 원인

(단위 : 명, %)

양극화의 원인	종합건설			전문건설		
	1순위	2순위	가중합	1순위	2순위	가중합
기술력 차이	1	7	4.5	23	31	38.5
영업력 차이	18	6	21.0	91	34	108.0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하락	13	11	18.5	43	53	69.5
저가하도급	3	13	9.5	59	70	94.0
건설경기 침체	14	11	19.5	50	70	85.0

(2) 건설업체 양극화의 문제점

건설산업 양극화로 인해 건설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종합건설업의 대다수가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저해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기타 요인도 종합건설업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건설산업의 양극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점으로 볼 수있다.

<표 3-54> 건설산업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

(단위 : 명, %)

양극화의 문제점	종합건설			전문건설		
	1순위	2순위	가중합	1순위	2순위	가중합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34	11	39.5	194	31	209.5
건설업체간 갈등 초래	5	12	11.0	38	72	74.0
건설업체간 상생발전 저해	9	25	21.5	32	151	107.5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부족

1) 상생협력 관련 인식 부족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 각각의 입장에서 상호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와 상생협력 정도에 대하여 61.2%가 보통이라 응답하였고, 28.6%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상생협력 정도에 대하여 역시 74.3%가 보통이라 응답하였고, 12.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55>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정도

(단위 : %)

상생협력 정도	아주 잘됨	잘됨	보통	잘 안됨	아주 잘 안됨
종합건설	0.0 (0)	28.6 (14)	61.2 (30)	6.1 (3)	4.1 (2)
전문건설	1.1 (3)	8.1 (22)	74.3 (202)	12.9 (35)	3.7 (10)

또한 앞에서 종합건설업체 내부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상생협력 정도도 보통이 71.4%인 점과 잘 안되고 있다는 인식이 16.3%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종합건설업체 내부간 상생협력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6> 종합건설업체 내부간 상생협력 정도(종합건설)

(단위 : %)

상생협력 정도	아주 잘됨	잘됨	보통	잘 안됨	아주 잘 안됨
종합건설	0.0 (0)	10.2 (5)	71.4 (35)	16.3 (8)	2.0 (1)

2) 상생협력이 안 되는 이유

상생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는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 부족이라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형건설업체의 인식부족과 관련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34.4%의 기업이 관련제도의 미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어서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 부족, 대형건설업체의 인식 부족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대형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지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로 관련제도의 미비와 대형 및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 부족을 상생협력이 안 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표 3-57>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

(단위 : %)

이유	대형건설업체의 인식 부족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관련제도의 미비	기타
종합건설	27.8 (5)	33.3 (6)	11.1 (2)	22.2 (4)	5.6 (1)
전문건설	25.0 (32)	28.9 (37)	10.2 (13)	34.4 (44)	1.6 (2)

제 4 장 대전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 4 장

대전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1절 관련제도 개선 : 중앙정부

제2절 건설산업 선진화와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제3절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제1절 관련제도 개선 : 중앙정부

1.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제도의 개선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와 지자체 발주 물량의 증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뒤를 이어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하면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자체의 발주물량 증대와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과 지자체의 발주물량 증대로 건설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발주물량의 증대를 중소건설업 보호제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단위 : %)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종합건설	전문건설
경영건설팅 지원	2.1 (1)	0.7 (2)
지자체 발주 물량의 증대	37.5 (18)	27.5 (4)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	31.3 (15)	30.9 (83)
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도입	2.1 (1)	7.8 (21)
건설관련 규제의 철폐	6.3 (3)	8.6 (23)
신규 기술개발 제도 도입	2.1 (1)	3.3 (9)
건설업 진입 장벽 강화	0.0 (0)	0.7 (2)
국가·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적극 시행	14.6 (7)	19.7 (53)
건설공사 민원 해결	2.1 (1)	0.7 (2)
기타	2.1 (1)	0.0 (0)

1)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업체 수주 제고

지방계약법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착시키고 재정집행의 투명성·경제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시행되었다. 지방계약법은 앞의 설문조사에서 37.7%가 건설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64.7%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증가를 들고 있다<표 3-1 참조>.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지방계약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물량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 건설업관련 분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앞에서 지적된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애로 사항을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실시

앞의 설문조사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75.5%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더욱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에 달하고 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금액을 현행보다 더욱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제고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서도 지역 건설업체가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통합), 한국전력공사 등 대전에 소재하는 정부 투자기관들에게도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지역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향후에는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정도의 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공동수급비율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해당 발주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지역 건설업체 공동수급비율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확대

(1)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 반영 및 물량 확대 방안

앞에서 지자체의 지역제한 입찰제도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63.2%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 영향을 미친다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제고를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소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30.4%가 지역 중소기업 물량을 근간으로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17.4%가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13.0%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절반 가까운 44.7%가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19.3%가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합하면 현행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하고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물량을 근간으로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2> 지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

(단위 : 명, %)

지역제한입찰제도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의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지역 중소기업 물량을 근간으로 물량 확대 필요	30.4 (14)	-
현행 제도의 유지가 적절	28.3 (13)	21.9 (59)
제한기준을 자치구 행정구역단위로 시행	4.3 (2)	8.4 (23)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	13.0 (6)	44.7 (123)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17.4 (8)	19.3 (53)
제한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	6.5 (3)	4.0 (11)
	0.0 (0)	1.8 (4)

주 :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는 국가공사 및 지방공사 모두 7억, 종합공사는 50억원 또는 7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또는 6억원임

또한, 지역제한 입찰공사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대전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선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며,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확대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확대하고,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BTL 발주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4-3> 지역제한입찰공사 물량 확대 방안(종합건설)

(단위 : %)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확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 확대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BTL 발주물량 축소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
28.6 (10)	17.1 (6)	20.0 (7)	34.3 (12)

(2)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 강화

현행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 요건은 지역제한경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일 90전일까지 당해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 대상금액의 상향조정(2009.3.5)과 함께 지역우대혜택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타 지역업체가 공사지역으로 일시적 진입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 설정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변경된 고시를 통하여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대전광역시 는 이러한 입찰참가 제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상향 조정된 대상금액의 효과가 지역업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이후 대상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4-4>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09.3.5)

구 분	공사유형	개정 전	개정 후
국 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76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공공기관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주 : 지방건설공사 :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전문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2009.4

4)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의 활성화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참여자의 상생협력 없이는 건설시공이 불가능하고 대등한 협력관계 없이는 경쟁력 강화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중소 건설업체간 파트너링 공사방식, 즉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겠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국가계약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이 적용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지역의 종합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 간에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계약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6.9%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하는 구성방식의 문제 및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구성방식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35.7%가 계약이행, 시공책임, 하자보수 등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이외에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사업영역이 대형전문건설업체로 옮겨가는 데 따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주청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표준계약 지침」과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대상 공사의 공종범위 및 금액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가 요구된다²⁰⁾.

<표 4-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전문건설)
(단위 : 명,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	응답수	구성비
종합과 전문건설사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하는 구성방식의 문제 및 혼선을 극복하기 위한 구성방식의 명확한 규정	97	36.9
계약이행, 시공책임, 하자보수 등의 명확한 구분	94	35.7
구성원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의 보장	22	8.4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관리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20	7.6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사업영역이 대형전문건설업체로 옮겨가는데 따른 제도의 보완	28	10.6
기타	2	0.8

2.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1) PQ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20)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40쪽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행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적격심사 기준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4-6> 현행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단위 : %)

현행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현행대로 시행	42.6 (20)	39.0 (105)
최저가입찰제로 변경	2.1 (1)	4.8 (13)
적격심사 기준내용 조정	48.9 (23)	45.7 (123)
다른 입찰제 신설 시행	4.3 (2)	9.3 (25)
기타	2.1 (1)	1.1 (3)

적격심사 기준내용 조정은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토록 경영상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적격심사²¹⁾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배점기준간 점수차이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즉 현행 경영상태 만점기준 AAA에서 공사별로 A⁺~A⁻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영상태 배점기준간 점수차이는 업계평균(BB⁺)이상 구간에서 격차를 축소(0.3~1.0점)하고 업계평균이하 구간에서는 격차를 확대(0.6~2.5점)하는 것이다.

둘째, 대표자 및 구성원의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대표자의 통과기준을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B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하고 5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대로 BB⁻를 유지한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구성원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BBB⁻에서 BB0로 2단계 하향하고 5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BB⁻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

21)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령」 회계예규를 개정해야 한다.

2) 적격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낙찰률 유지 방안

최근 수년간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확대, 품셈현실화 등으로 예정가격이 실행가격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게 하여 성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본래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실적공사비 상한구속성으로 인해 계약단가는 예정가격보다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낮게 형성된 계약단가가 다시 실적공사비로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단가가 하락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품셈은 거품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간 품셈의 지속적인 가격 현실화로 현재 건설업체가 적정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거품이 있는 부분은 계속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하락으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 중소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낙찰금액 수준 유지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이 라는 문제점을 방지·보완하는 방안²²⁾으로 첫째,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적용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원가가 산정된 부분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 둘째, 입찰가격 평점을 예정가격 대비 88% 입찰시 만점에서 95% 입찰시 만점을 받도록 평점 산식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도는 정부가 건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안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낙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우리의 독특한 건설문화를 감안한 차선의 낙찰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특성상 극단적인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도는 시장실패와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도는 앞으로 최고가낙찰제

22) 박성민·백영권,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6.19, 21쪽.

(Best Value)로 이행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등급별 입찰제도 보완²³⁾

앞에서 분석한 등급별 입찰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단기적 개선방안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시골실적 합산방식,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 등이 있다. 우선 시공실적 합산방식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평가함으로써 등급내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단, 공사의 시공비율이 미미한 구성원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은 실적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만점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등급내 입찰참가자가 많아짐으로써 등급내 경쟁이 확대되어 공동도급 필요성이 감소하여 공사물량의 상위등급 이전이 감소될 것이다. 적절한 만점업체의 수준은 현재 실적평가 만점업체의 비율과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장기적 개선방안

장기적으로는 등급제한 입찰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공공공사의 수주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중소기업 보호효과는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중소기업 보호효과는 더욱 미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가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유지될

23)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45쪽 재정리

수 있는 새로운 틀 마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4) 최저가낙찰제도의 제도적·정책적 조정

(1)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시행의 재검토 필요

국토해양부는 '예산 10% 절감방안'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이 제도의 강력 시행으로 인해 공공건설현장의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선투자의 역력이 없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는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 중단'이라는 파행적인 현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 10% 절감방안'은 최소한 실시단계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국내 및 지역 건설산업이 연착륙했다는 확신이 서는 시점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내 및 지역 건설산업의 연착륙 시점까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극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현 실정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공공건설 부문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완비한 후, 중기적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⁴⁾.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예비비' 개념을 정부 예산·회계제도(총사업비관리지침)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재정사업의 'Ownership'을 부여하는 사업책임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단계별 설계 검토와 공사비 검토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예산준수설계(Design to Cost)'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도급자의 선별적 수주 및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원도급자들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을 선별 수주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도급자들이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적 수주 전략을 구축하고 저가

24) 이영환·구분상,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의 실태분석과 제언」,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8.11.28, 22쪽.

인력 내지 자재가 아닌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덤핑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의 강화를 단숨에 예산절감보다는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함으로써 건설업의 기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²⁵⁾.

첫째, 저가 심의를 통하여 덤핑 낙찰을 방지하려면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50% 이상이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노무비 저가 심의를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량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을 현행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이하'에서 85%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저가 하한선을 60%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찰자의 원가 절감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저가 투찰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저가 사유로서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기계, 장비의 직접 보유에 의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계열사로부터 자재를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또한 입찰 참가자가 해당 현장 인근에 또 다른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사토장이나 토취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인근 현장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저가 투찰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가 심의시 공법 대안 제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특수한 저가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고, 보다

25) 최민수,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 기능 강화방안」,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 7. 9)에서 재정리함.

완성도 높은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나 평면 계획과 같은 설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폭넓은 대안 제시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저가심의 탈락자 요청시 저가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저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 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가심의 행정업무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1차 객관적 심사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부 입찰자들의 담합에 의하여 부적정 공종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데 활용되는 '공종기준금액'산정시 공종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확대 시행²⁶⁾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종합적인 발주, 입찰, 계약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의 성격, 규모, 하자책임구분 등에 하자가 없을 경우 분할발주 금지규정의 폐지를 통하여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체계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기관공사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조달청에 위임발주 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 위임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발주처의 관행이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조달청에 위임 발주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대기업과 지역 중견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한 공동도급업체에 일괄 발주하던 대형공사를 공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처음부터

26)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48~151쪽 재정리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에 발주하는 분할발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부대공사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공사영역에 대한 적절한 분류가 요구되고 있다. 즉, 건설공사 예산 편성시 공사현장 및 공정별로 분리하고 편성하여, 설계 및 발주시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로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대공사가 포함된 전문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주된 공종의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에 따라 주된 공정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2이상이면 주된 공정의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다.

3. 하도급 관련 제도의 개선

1)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생산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하도급 생산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⁷⁾. 예를 들어, 하도급자가 특정 공정에서 필수적인 특허를 갖고 있으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여 협상에 유리하고, 자동차산업과 같은 독과점산업에서는 하도급자는 소수의 원도급자와 거래해야 하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자는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27) 이의섭,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 4.4, 4쪽.

불구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30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자는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다른 하도급자에게 알려주는 「비드 쇼핑(bid shoppng)」까지도 합법적인 상행위로 간주하여 불법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벌금 등의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화 정책도 다른 독과점 산업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와는 차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도급자의 효과적인 보호제도

대전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자의 효과적인 보호제도 중 우선순위를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견이지만, 입찰시 하도급할 자와 하도급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중요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하도급자들은 대부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표 4-7> 하도급자 효과적 보호제도의 중요도(전문건설)

(단위 : 명, %)

하도급자 효과적 보호제도의 중요도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가중합	최종순위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177	14	184.0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36	66	69.0	3
입찰시 하도급할 자와 하도급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40	69	74.5	2
저가하도급심사제도	9	46	32.0	4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5	15	12.5	6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4	41	24.5	5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재검토 및 정책대안

지난 2009년 3월 5일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하면, 원도급자의 통제권 저하로 인한 효율적인 공정관리의 어려움, 사적 자치원칙의 훼손, 하도급대금 주기 장기화로 인한 하도급자의 유동성 악화, 발주처의 행정인력 및 비용 증가, 법적 분쟁 발생의 가능성 증가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²⁸⁾.

2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첫째, 하도급자보다 약자인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오히려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현재는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 자재비용,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도급대금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 자재공급자, 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이 현저히 약화되어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셋째,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면 원도급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높다. 넷째, 하도급 대금 지급 주기의 장기화, 원도급자의 선투입 자재비용 지급 곤란 등 공사비용 흐름의 장애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는 모든 공공공사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정도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를 모든 공공공사에 도입하는 계획은 건설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고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²⁹⁾.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다. 직접지급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독일이나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직접 지급하는 요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와 감독을 내실화해야 한다.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현행 규정만으로도 발주 담당 공무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제재 수단이 충분하여 발주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면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발주처는 수많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발생한다.(이의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5.3.)

29) 이의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5.3. 21~22쪽.

30) 현행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할 경우 「건설업」(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자의 기성대가 지급 중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하고 있고(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 담당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당 근로자 중 3인 이상 대금 수령 여부 확인 등)토록 되어 있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IV절 제5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제2절 건설산업 선진화와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1. 대전광역시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대전광역시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시책을 입안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건설업체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책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의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전광역시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시책 중 비중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별 시책과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수요자인 지역건설업체 중심의 시책 개발이 향후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대전광역시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시책 중 비중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별 시책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공동도급제 시행, 지역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지적하였고 이어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유도,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종합건설업 5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6억원이상)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표 4-9> 대전광역시 지원 중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

(단위 : 개)

대전광역시 지원 중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	종합건설		전문건설	
	가중합	순위	가중합	순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34.3	2	148.4	2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종합 50억이상, 전문 6억이상)	27.8	4	123.0	4
대형공사의 분할발주·공동도급시행·지역협력업체 등록지원	39.1	1	150.4	1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29.1	3	130.7	3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 진입·활동 제한 등 건설업체 관리	23.4	5	89.3	5
건설관련 각종 정보 제공	14.1	6	76.2	6
우수 건설업체 표창 및 자치구 평가	8.6	7	38.5	7

또한 대전광역시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행정지원 시책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의견을 종합하면,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단계별 참여 등의 시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4-10>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행정지원 시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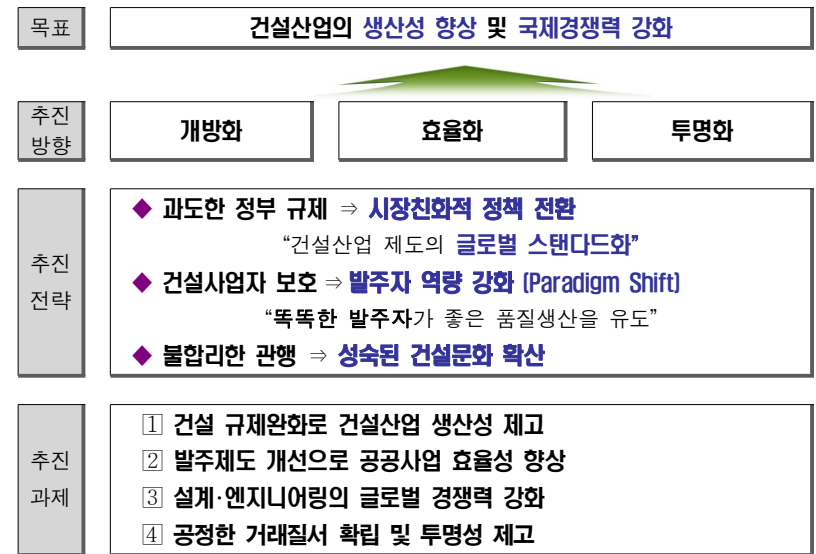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행정지원 시책	종합건설	전문건설
효율적인 업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30.6 (15)	34.0 (90)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	34.7 (17)	22.6 (60)
공공사업 단계별 참여	26.5 (13)	17.0 (45)
민간사업 단계별 참여	4.1 (2)	2.3 (6)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력 강화	4.1 (2)	3.0 (8)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	0.0 (0)	4.5 (12)
상생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0.0 (0)	16.6 (44)

2. 지역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2009. 3. 26)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방안은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국토해양부 주도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4-1]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개방화, 효율화, 투명화라는 3가지 방향에서 시장친화적 정책과 발주자 역량 강화, 성숙된 건설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건설업분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발주제도를 개선하여 발주자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집 짓듯이”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셋째, 설계·엔지니어링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로 성숙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이 과거의 비효율에서 환골탈태하여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공공건설 사업비가 절감되고,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 점유율도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패·부조리 근절로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대전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위에서 소개한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지역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 그리고 추진과제별 가장 시급한 추진사업을 조사하였다.

(1)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역적 우선과제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이 선진화를 위해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가장 먼저 건설규제 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을 제고를 들었고, 이어서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성 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순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종합건설업과는 달리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건설규제 완화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들었으며, 후순위는 종합건설업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11>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역적 우선과제

(단위: 개)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할 행정지원 시책	종합건설		전문건설	
	가중합	순위	가중합	순위
건설규제 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25.5	1	113.5	2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24.5	2	156.0	1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6.5	4	29.0	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15.5	3	96.0	3

종합하면, 지역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먼저 건설규제 완화와 발주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셋째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추진과제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규제를 완화해야 할 과제는 종합건설업은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를 들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을 들고 있다.

<표 4-12>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과제

(단위: %)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과제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	27.7 (13)	45.3 (117)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 완화	12.8 (6)	14.0 (36)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59.6 (28)	39.5 (102)
기타	0.0 (0)	1.2 (3)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하여 유연한 업역체계가 가능하도록 건설업종간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고, 무자격 부실업체에 대한 실질적 검증·퇴출을 위해 보증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이행보증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9월부터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개편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재원리 도입을 위해 건설보증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종간 영업제한으로 단순공사라도 종합건설업(원도급)→전문건설업(하도급)의 다단계 생산체계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법령이 정한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이 가능하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시공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표 4-13>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규제완화 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	1. 영업범위 제한 폐지	'09.12
	2. 등록기준 중복 인정	'09. 9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 완화	3. 명칭사용규제 폐지 및 대표자격 규제 완화	'09.12
	4. 겸업금지 규제완화 방안 마련	'09.12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5. 연대보증제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 확대	'09. 9
	6.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09.12
	7. 건설보증시장 개방 추진	'09.12

(3)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발주제도 과제는 종합건설업은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을 다양화 하고,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를 지적하였고, 전문건설업체도 절반 이상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절반은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와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로는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을 위한 발주방식 다양화와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제는 자율과 책임에 의해 공공발주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입·낙찰제의 변별력 강화를 통해 최종 공사비·공기·품질 제고 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고, 또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라 발주 역량 및 책임 강화를 위해서 성과관

리 및 사업관리체계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우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과제로는 공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한 공사 이외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및 시공만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표 4-14>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단위 : %)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	36.2 (17)	51.7 (135)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12.8 (6)	5.7 (15)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36.2 (17)	23.0 (60)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14.9 (7)	18.8 (49)
기타	0.0 (0)	0.8 (2)

<표 4-15> 정부의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	1. 턴키 대상공사 확대	'09. 9
	2. 턴키 설계보상비 현실화	'09. 9
	3. 실시설계·시공 일괄방식 도입	'09. 9
	4. 새로운 발주방식제도 검토	'09.12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5. 상설심사의위원회 설치	'09.12
	6. 시범사업 실시	'09. 7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7. PQ 변별력 강화	'09. 9
	8. PQ 심사 자율권 부여	'09. 9
	9.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09. 9
	10. 최저가낙찰제 심사방식 개선	'09. 9
	11. 저가낙찰공사 보증심사 강화	'09. 9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12. 발주자 역량진단 모델 및 사업관리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09.12
	13. 공공공사 사후평가방식 체계화	'09.12

둘째,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우선 입찰의 경우 비용절감 및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공사물량, 공법, 단가 등을 입찰자가 직접 산정하여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는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대안 제시도 허용한다. 또한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4)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설계기준, 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서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및 낙찰방식 개선,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의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강화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4-16>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단위 : %)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종합건설	전문건설
설계·엔지니어링 입찰·낙찰방식 개선	35.6 (16)	24.2 (62)
설계기준, 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46.7 (21)	52.0 (133)
건설엔지니어링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15.6 (7)	22.3 (57)
기타	2.2 (1)	1.6 (4)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 설계의 입찰·낙찰방식 및 설계도서·대가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하고, 정보·자금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 중에서 우선, 설계기준, 대가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관련해서는 설계기준, 대가

기준을 기술 및 공사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방서 체계를 최종목적물의 성능을 제시하는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능보증·지불규정 등 성능계약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공사비 요율을 공사규모·특성·설계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설비정책 가산방식을 마련하여 우선 도로·철도·하천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설계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및 낙찰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시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 및 적격심사방식의 변별력 부족으로 기술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는 점수제에서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전환하고, 기술자·제안서평가로 적격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표 4-17> 정부의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설계·엔지니어링 입·낙찰방식 개선	1. 적격심사방식 개선	'09. 9
	2. 시방서 체계를 성능중심으로 개선	'09.12
	3. 설계비 지급방식을 합리화	'09.12
	4.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09.12
건설엔지니어링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5. 엔지니어링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09. 9
	6. 해외진출국 지원체계 강화	'09.12

(5)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의 해소도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표 4-18>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단위: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	종합건설	전문건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9.6 (28)	45.9 (122)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23.4 (11)	42.5 (113)
상습·중복 위법사항 처벌 실효성 제고	17.0 (8)	10.9 (29)
기타	0.0 (0)	0.8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는 건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거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과도한 처벌 법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산업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국가계약제도에도 반영하여 확대 시행하고, 또한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참여 주체간 상생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

<표 4-19> 정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09.12
	2.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	'09. 9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3. 포괄보증제도 도입	'09.12
	4. 하도급 부당특약 제재규정 신설	'09.12
	5. 건설산업정보와 보증계약정보 연계	'09. 9
상습·중복 위법사항 처벌실효성 제고	6.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 강화	'09.12

다음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 증하는 데도를 도입하고, 둘째 하도급 부당특약사례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 하고, 셋째 현행 건설산업정보망을 보증계약 정보와 연계하여 이면계약 등 허위정보 입력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적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1) 중소기업업체의 지원 방향

대전광역시에는 절대 다수의 지역 중소기업업체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한 채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판단은 산업차원의 효율성과 기업차원의 형평성을 축으로 하여 제도적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¹⁾.

첫째, 중단기적으로는 신생기업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조성과 함께 공공건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생기업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 교육과 컨설팅, 발주 및 기술관련 정보 제공, 금융지원 등 인큐베이팅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쉼비기업의 정리를 위한 출구전략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역제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업체보호제도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률과 지역별 편중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업체에게 실질적인 도

31) 권오현·발철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 8. 13. 33~34쪽.

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복잡다단한 중소기업체들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급하한제도, 지역업체참여가점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일부 제도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수주 편중 심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 정책방향이 단기 정책방향과 상충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처한 중소기업체들의 현실이 매우 취약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소기업체들은 미래 정보화 사회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지원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여러 경쟁 제한적 제도들은 중소기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지원컨설팅, 정보화시스템 구축지원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2)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지원³²⁾

(1) 조달청 위임 발주의 자제

지역공사는 조달청에의 위임 발주를 자제하고, 지역에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 산하기관, 중앙 공기업 등의 지역공사에서 지역업체 등의 참가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발주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 방안으로서 사전적 입찰 참여규제제도인 지

32) 김변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66~168쪽 제정 리.

역제한제도는 지역시장의 경쟁 제한, 지역공사의 이권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실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확대 시행 등이 요구되고 있다.

(2) 경쟁력 강화 유도위한 발주정책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체발주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역내 건설산업의 경쟁 능력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련된 발주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기업의 사업추진 및 기술능력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력 있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유도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턴키 또는 CM(건설사업관리)공사의 분야별 시공에 있어서 기술능력을 확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지역내 기술력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와 경쟁력 배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발주, 공동도급발주,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발주 등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발주제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감독기관(대전광역시)의 저가 하도급 심사의 철저 이행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동사에 대한 사업계획 협의 및 인·허가시 지역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권장 등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상 저가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공사 하도급 금액은 원도금액의 82%를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 신고시 원도금액 대비 82% 미만 공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는 감독기관으로서 저가 하도급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도급자는 때로 발주청의 심사를 기피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강요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가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하도급 저가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하도급 금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3) 부실업체 규제

(1)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실태조사 실시

대전광역시 건설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관련 협회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 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다.

대전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각각 54.2%, 52.2%가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반면,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합건설업 31.3%, 전문건설업 33.2%로 나타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0>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

등록기준	현재보다 강화	현재보다 완화	현재기준 유지
종합건설	31.3 (15)	14.6 (7)	54.2 (26)
전문건설	33.2 (89)	14.6 (39)	52.2 (140)

그러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나 완화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본금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건설업 40.0%, 전문건설업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종합건설업 20.0%, 전문건설업 34.0%가 기술자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사무실 기준과 4대 보험 완납 등 추가적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4-2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완화 방법

(단위 :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완화 방법	종합건설	전문건설
자본금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40.0 (12)	44.2 (69)
기술자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20.0 (6)	34.0 (53)
사무실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16.7 (5)	7.1 (11)
4대 보험 완납 등 추가적인 기준 수립	10.0 (3)	12.2 (19)
기타	13.3 (4)	2.6 (4)

(2)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 방안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각각 42.9%, 38.0%의 가장 많은 기업이 입찰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각각 28.6%, 27.4%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각 22.4%, 23.7%가 건설산업정보 DB 등에 의한 기업정보의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2>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 방안

(단위 : %)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 방안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8.6 (14)	27.4 (73)
입찰자격조건 강화	42.9 (21)	38.0 (101)
건설산업정보 DB 등에 의한 기업정보 공개 확대	22.4 (11)	23.7 (63)
최저가격 낙찰제도 확대	4.1 (2)	6.0 (16)
기타	2.0 (1)	4.9 (13)

<표 4-24>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단위 : %)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경영컨설팅 지원	2.1 (1)	0.7 (2)
지자체 발주물량의 증대	37.5 (18)	27.5 (74)
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	31.3 (15)	30.9 (83)
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도입	2.1 (1)	7.8 (21)
건설관련 규제의 완화	6.3 (3)	8.6 (23)
신규 기술개발 제도 도입	2.1 (1)	3.3 (9)
건설업 진입장벽 강화	0.0 (0)	0.7 (2)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적극 시행	14.6 (7)	19.7 (53)
건설공사 민원 해결	2.1 (1)	0.7 (2)
기타	2.1 (1)	0.0 (0)

(3) 등록기준 등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

등록기준 등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은 상황·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4.7%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5.9%가 상황·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종합건설업은 처분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전문건설업은 처분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표 4-23>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

(단위 : %)

정책방향	상황·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완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처분 강화	현행수준이 적정
종합건설	40.8 (20)	34.7 (17)	24.5 (12)
전문건설	35.9 (97)	38.5 (104)	25.6 (69)

4) 기타 행정지원 사항

(1)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제도 지원사항으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가장 많은 37.5%의 기업들이 지자체 발주물량의 증대를 요구하였고, 이어서 31.3%의 기업이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의 확보를 지적하였으며, 14.6%의 기업이 국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가장 많은 30.9%의 기업이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를 주장하였고, 이어서 27.5%의 기업이 지자체의 발주물량의 증대를 요구하였으며, 19.7%의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로서 지자체 발주물량의 증대와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 시행도 주장하였다. 기타 소수의견으로 건설관련 규제의 완화, 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및 신규 기술개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 자금악화현상 해소방안

중소건설업체는 경기상황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경기도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중소기업체는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금악화를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소방안을 조

사한 결과, 31.7%의 기업이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27.7%의 기업이 금융권의 대출 확대, 37.3%의 기업이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4-25> 최근 자금악화현상 해소방안(전문건설)
(단위 : %)

구분	금융권의 대출 확대 환경조성	공제조합의 어음할인 확대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상향조정	어음 결제기간의 단축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시행	기타
구성비	27.7 (69)	2.4 (6)	27.3 (68)	2.8 (7)	31.7 (79)	8.0 (20)

제3절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1.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대책

대전지역 건설산업에서 양극화는 주로 종합건설업체와과 전문건설업체간, 그리고 종합건설업체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앞에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는 주로 중소건설업체 수주능력 제고와 수주물량의 확대를 지적하였고, 전문건설업은 주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수주물량의 확대와 저가투찰 방지도 지적하였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응답을 종합하면, 건설업분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능력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부가하여 수주물량을 확대하고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대책
(단위 : 명, %)

양극화 문제 해소대책	종합건설			전문건설		
	1순위	2순위	가중합	1순위	2순위	가중합
중소건설업체간 기술력 향상	3	4	5.0	31	29	45.5
중소건설업체 수주능력 제고	20	10	25.0	76	30	91.0
저가투찰 방지	10	8	14.0	53	46	76.0
저가하도급 방지	2	8	6.0	51	96	99.0
수주물량 확대	14	19	23.5	56	62	87.0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1)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

대전지역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공사규모별로 시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종합건설업은 CM(건설사업관리), 전문건설업은 시공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표 4-27>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 (단위: %)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	종합건설	전문건설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	33.3 (16)	44.6 (119)
공사규모별 시장 배분	16.7 (8)	13.1 (35)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20.8 (10)	15.0 (40)
종합(또는 대형)은 CM, 전문(또는 중소)은 시공의 역할 분담	16.7 (8)	13.9 (37)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 사업권 부여 배려	12.5 (6)	13.5 (36)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 전문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 또는 종합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잘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의 31.2%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라 응답하였고, 이어서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19.4%), 그리고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를 강화하는 것(16.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상생협력이 잘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36.7%가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 꼽았고, 이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지원(23.8%),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12.9%),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14.3%)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4-28>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다중응답)

(단위: %)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종합건설	전문건설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의 강화	16.1 (15)	26.7 (127)
대중소 건설업체의 성과공유제의 확립	4.3 (4)	3.8 (18)
대중소 건설업체간 기술협력 강화	8.6 (8)	7.6 (36)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19.4 (18)	14.3 (68)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31.2 (29)	23.8 (113)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12.9 (12)	14.7 (70)
중소건설업체 경영지원	7.5 (7)	9.1 (43)

3) 상생협력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사항

건설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력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종합건설업의 경우 32.7%의 기업들이 원·하도급업체 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30.6%의 기업들이 기업간 자율적·유기적인 분업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4%의 기업들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4-29>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단위: %)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종합건설	전문건설
정부가 개입 말고 기업간 자율적·유기적 분업체계 형성 유도	30.6 (15)	20.2 (53)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32.7 (16)	19.5 (51)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착	20.4 (10)	22.1 (58)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독체계 확립	4.1 (2)	6.9 (18)
하도급 관련 제도 강화	12.2 (6)	30.5 (80)
	0.0 (0)	0.8 (2)

전문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체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착이라고 응답한 기업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간 자율적·유기적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업체가 각각 22.1%, 20.2%로 뒤를 이었고, 원·하도급업체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업체가 19.5%를 차지하였다.

4) 종합건설업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의 정립

현행 종합건설업의 생산구조를 결정하는 제도는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중 다양한 유형의 제한경쟁입찰방식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낙찰제도 역시 규모별 업체 간의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협력구조로는 공동도급제도가 있으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측면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물량배분적 성격이 강하다. 한편, 종합건설업체 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행 종합건설업의 경쟁제한 위주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종합건설업의 경쟁 및 협력구조 패러다임은 물량배분 중심의 경쟁 제한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장지향적 접근이다.

뉴 패러다임에 입각한 경쟁 및 협력구조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종합건설업역 내 대·중·소 기업간 역할분담에 따른 협력체계의 회복과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간 하도급규제의 철폐 등 업역 및 생산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입·낙찰제도를 공정경쟁 위주로 개선하고 현행 물량배분 중심의 중소건설업보호제도를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쟁 및 협력의 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다음 네가지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³³⁾. ① 현행업역과 영업범위가 분할된 시장 구도를 통합된

시장도로 개선, ②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배분구도를 기업의 역할분담에 따른 구도로 전환, ③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경쟁시스템을 실질적인 기술경쟁시스템으로 전환, ④ 수주를 위한 형식적 협력시스템을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으로 개선.

<표 4-30> 경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기본방향

기존 제도	새로운 제도
업역과 영업범위가 분할된 시장구조	통합된 시장구조
기업규모에 따라 시장배분구조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에 따른 분할구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경쟁시스템	실질적인 기술경쟁 시스템
수주를 위한 형식적 협력 시스템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실질적 협력시스템

자료 : 윤영선 외,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 및 협력구조 고찰」,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8. 10. 29, 14쪽.

3.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³⁴⁾

1) 지역업체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앞으로 건설업의 글로벌화와 함께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국내 대형업체 뿐 아니라 외국업체의 지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건설산업은 아직 국제계약이나 관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역내 사업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함은 물론, 지역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간 컨소시엄 확대 등을 통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자금 투입시기와 회수시기를 예측하고 조정하는 등의 지역업체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뿐

33) 윤영선·두성규·백영권·최석안·최은정,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 및 협력구조 고찰」,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8. 10. 29, 9쪽.

34) 김번옥·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80쪽 재정리.

만 아니라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의 시공능력은 물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도급순위가 수주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내 건설업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수주역량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2)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협력체제 내의 전문화

협력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체제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형업체는 사업영역을 조합화하고 중소기업은 부문별 생산을 전문화하여 대형공사를 공동 수준하는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앞의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앞으로 지역의 상위에 속하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는 시공부문보다 설계와 CM(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화를 이루고, 지역의 중소형 전문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부문별, 공종별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협력체제는 종합건설업체간의 협력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조정·관리 전문인력 필요

또한, 협력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내에 협력체제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협력참여업체의 관계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수행에 따르는 조직 내 개인간의 관계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조직내의 수평적 관계를 조직외부로 확대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고객의 필요를 새롭게 파악하고 건설산업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잘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4. 대형업체와 지역중소업체간의 전략적 제휴³⁵⁾

지역 간 업체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의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에 의한 지역의 건설시장의 잠식으로 인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자생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건설업의 과급효과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 진출을 가로막았던 각종 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들의 업무영역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건설업계 또는 중소 건설업체 업무영역까지 하향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내 건설업체간의 업무영역 경쟁이 심화되고 수주환경 또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수도권의 대형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들의 앞선 기술을 습득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독자적인 틈새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함으로써, 대형업체 중심의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가격, 납품 등의 교섭우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5) 김번옥·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81쪽 재정리.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내용으로 건설업과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상호작용관계 속에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역할과 지역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해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의 산업적 특성 개관, 그리고 발주액, 수주액, 시공액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건설경기 추이와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조직형태·종사자 지위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건설투자 비중은 2007년 현재 각각 7.4%, 16.1%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 기여율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기를 제외하고는 음(-)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의 입지계수는 1995년 1.34에서 2007년 0.88로 산업특화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업의 고용흡수력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건설업체수는 2008년 현재 종합건설업 199개, 전문건설업 808개로 전국의 2% 수준이며 200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이며,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비중은 건설업 전체의 79.7%(2007년)로 전국평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대전지역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영상태는 종합건설업은 5년

전과 1년 전보다 개선되었고 전문건설업은 악화되었으며,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5년 전보다 1년 전인 최근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모두 경영상태는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 중점사업분야의 전환 및 사업 다각화 추진 등의 이유로 모두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 난망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한편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공사물량의 부족을 지적하였고 극복과제로는 영업력의 강화를 꼽았다..

대전지역 건설업 관련 정책 및 제도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수주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직접시공의무제도, 지역제한입찰대상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BTL 민간 투자사업 확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입찰관련 제도들과 관련해서는 적격심사제도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존속해야 한다고 평가하였고, 등급별입찰제도는 절반정도의 건설업체가 이전에 비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 정도는 취지는 좋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최저가낙찰제도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시 추가 공사비 미반영,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등의 불만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고,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상생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정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보통이라 응답한 반면, 종합건설업은 잘된다는 편이 많았고 전문건설업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종합건설업은 건설업체의 인식부족을 들었고, 전문건설업에는 관련제도의 미비와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인

식부족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대전지역내 대형 종합건설업체는 많지 않다. 지역업체들이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등에 대한 참여율은 30%에 불과하고 70%는 외부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업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형건설사와의 상생협력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대형공사에서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설관련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전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행주체가 중앙정부별, 대전광역시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상생협력방안에 관련해서는 주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실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입찰계약 제도로서 PQ심사제도의 개선, 등급별 입찰제도의 보완을 논의하였으며, 최저가낙찰제도의 제도적·정책적 조정방안, 하도급 관련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행정지원 기능강화 방안으로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향, 지역건설업의 선진화 방안,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지원, 부실업체 규제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으로서는 건설업체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종합건설업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 정립,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대형업체와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관련제도의 개선 : 중앙정부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크게 수주, 입찰계약, 하도급 관련 등 3개 분야에 걸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주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극 활용,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실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지방계약법의 적극 활용방안으로서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발주물량의 확대,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지방계약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수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 당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의무화를 통해 수주 제고에 기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금액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비율을 50%이상 확보하며, 지역내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사업의 경우는 향후 공사금액을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한편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 물량을 근간으로 물량을 확대(종합건설업)해야 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전문건설업)해야 한다. 물량 확대방안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를 분할발주해야 하며, 정부의 BTL 발주물량은 축소해야 한다. 또한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입찰공고일 90일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강화되었는 바, 이의 효과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파트너

링 공사방식)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방안으로는 종합과 전문건설사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성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계약이행, 시공책임, 하자보수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입찰계약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PQ심사제도의 개선, 적격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낙찰률 유지, 등급별 입찰제도의 보완,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PQ심사제도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정방안으로는 하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배점기준간 차등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표자 및 구성원의 PQ의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적격심사제도의 취지 -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성실시공을 도모함 - 에 부합하는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적용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원가가 산정된 부분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과 입찰가격 평점을 95% 입찰시 만점(현행은 88%)을 받도록 평점산식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등급별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공실적 합산방식, 실적 평가 기준 완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등급제한 입찰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예산 10% 절감방안'은 최소한 실시설계 이전단계에 있는 사업에만 실시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연착륙시점까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유보해야 하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덤핑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저가심의 기능을 예산절감보다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확대 시행토록 발주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대형건설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분리공사의 금지조항의 예외사항을 살려 대전광역시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분할 발주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하도급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건설 하도급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하도급자의 효과적인 보호제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재검토 및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건설 하도급거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항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따라서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화 정책도 다른 독과점산업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와는 차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하도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적한 바, 이를 확대 시행해야 하고, 또한 입찰시 하도급할 업체와 하도급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3월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통제권 저하로 효율적인 공정관리의 어려움과 사적 자치원칙의 훼손, 하도급대금 주기 장기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전면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정책대안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하도급대금 지급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와 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해야 한다.

2. 건설산업 선진화와 활성화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8년에 시행한 지원시책들이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시책을 우선 순위를 두어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향후 비중을 두고 역점을 두어야 할 지원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전광역시 지원 시책 중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시책으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지역협력업체 등록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이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유도하는 시책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향후 비중을 두어야 하는 행정지원 시책으로는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종합건설업)과 효율적인 업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전문건설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 공공사업에의 단계별 참여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기타 민간사업에의 단계별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의 강화 등을 중시하였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역적 우선과제로는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에 의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건설규제 완화 추진과제로는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의 확대와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의 촉진 시책을 들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발주제도의 개선과제로는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을 다양화 할 것과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는 설계기준, 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그리고 설계·엔지니어링 입찰·낙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들었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행정지원 강화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의 주종을 이루는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기존에 실시하던 공사 수주 확대 지원, 부실업체 규제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 방지,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추진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부가하여

건설업체의 경영애로 극복 지원, 자금악화 해소 지원 등의 추진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절대 다수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한 채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단·중기적으로는 신생기업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성과 함께 공공건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잡다단한 중소건설업체들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호·지원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의 위임발주를 자체 하고 지역에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시 산하기관, 중앙 공기업 등의 지역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가기회를 권장 내지는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20억원 미만의 의무하도급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기술자, 장비 기준 등으로 현재보다 강화해야 하고, 대전광역시는 관련 협회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덤핑수수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입찰자격조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정보 DB 등에 의한 기업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사항으로는 지자체의 발주물량의 증대,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 물량 확보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자금악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도

급대금 직불제의 확대시행, 금융권의 대출 확대 환경조성,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상향조정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4.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 건설업체 및 관련기관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양극화문제 해소대책, 상생협력 유도 및 정부의 지원사항, 종합건설업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 정립 방안,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대형업체와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양극화 인식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능력을 제고하고, 수주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전문건설업은 저가하도급의 방지를 부가하여 지적하였다.

둘째, 건설업체간 상생협력방안과 관련해서 우선, 상생협력시 중요한 점으로는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이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종합(또는 대형)건설업은 CM(건설사업관리),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의 역할 담당, 공사규모별 시장 배분 순으로 지적하였다.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대·중·소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십,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순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체간 경쟁 및 협력구조의 정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업역과 영업범위가 분할된 시장구도를 통합된 시장구조로 개선, 기업규모에 따른 시장배분구도를 기업의 역할분담에 따른 구도로 전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경쟁시스템을 실질적인 기술경쟁시스템으로 전환, 수주를 위한 형식적 협력시스템을 생산효율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체간 상생협력 체계구축을 위해 원도급자의 원활한 총괄·조정 - 특히 자금 결제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에 협력체제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업체들의 협력 뿐 아니라 수도권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소규모 기업체 적합한 독자적인 틈새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함으로써 대형업체 중심의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가격, 납품 등의 교섭우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수(2001), “대전·충남지역 건설산업의 동향과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2권, 2001.12.
- 강운산(2005), 「중소 건설업 실태분석과 육성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1.
- 건설교통부(2007),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 대책»,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자료, 2007.5.1.
- 곽종무(2006),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2.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 글로벌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전략」,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 안건자료, 2009.3.26.
- 국토연구원(2006), “건설생산체제 개선방안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토연구원, 공청회 자료, 2006.6.30.
- _____ (2007),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국토연구원, 공청회 자료, 2007.12.
- 권오현·박철환(2009),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8.13.
- 기획재정부(2009),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 중소기업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획재정부, 2009.4.
- 김기희(2009), 「대전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특성에 관한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09-07, 2009. 9.
- 김만식(2002),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2.
- 김명수(1997), 「중소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7-57.
- _____ (2003),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개정방안”, 국토연구원,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 2003.11.14.
- _____ (2006),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건설교통부.
- 김명수·권혁진(2003),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김민형(2008), 「일반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협력업체 지원·육성 방안 - 현행 지원 육성 방안의 효과와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3.
- 김번욱·강운산(2006),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7, 2006.12.

김성일·김민철·장현승(2007), 「해의건설 제도약을 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42.

김재영(2006), “건설산업 상생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미발간 자료.

_____ (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2006.6.30

김재영·권혁진(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7.

_____ (2007), 「중장기 건설보증 시장과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3.

김정호·이규방·김재영·김성일(1997), 「건설산업의 장기발전방향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7-34.

대전광역시(2009), “2009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2009.1.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08), 「전문건설업 현장 실태 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8.11.

박성민·백연권(2009),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6.19.

유일한·박광배·홍성호(2009), 「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09.4.

윤영선·두성규·백영권·최석인·최은정(2008), 「건설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 및 협력구조 고찰 -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8-13, 2008.10.29.

이영환·구분상(2008),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의 실태분석과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8.11.28.

이의섭(2003),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_____ (2006),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이의섭(2009),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2.

_____ (2009), 「포괄보증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4.22.

_____ (2009),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전면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5.3.

_____ (2009),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8.4.

이의섭·강운산(2004),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이승우·박성민(2007), 「건설분야의 향후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11.

최민수(2009),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 기능 강화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7.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8), 「새 정부의 건설규제 개혁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규제개혁TFT, 2008.4.

한국은행 대전지점(2001), 「대전·충남지역 건설업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은행 대전지점, 지역경제 조사연구 자료, 2001.7.

한국은행 대전지점(2005), 「행정도시 건설과 지역 건설업 발전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대전충남 2005-2, 2005.8.

< 통계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년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각년호.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통계청, <http://www.kosis.kr/>

한국은행(2003), 2000년 산업연관표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종합건설업체 대상

부 록

설문지

.....
 종합건설업 설문지

전문건설업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정책 연구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및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조사 결과 및 자료는 실태 파악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 8.

대전발전연구원장 육 동 일

조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연 락 처 : 연구위원 김기희 (☎042-530-3519), FAX 042-530-3535

면접원 정 보	이 름	연 락 처	검증원 정 보	이 름	검증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①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발전	① 국가계약법과 차별성 미약
②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	② 중소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③ 지방자치단체 발주물량 증가	③ 지자체 재량 강화로 부조리 증가
④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④ 지자체 계약능력 부족으로 비현실적임
⑤ 기타 ()	⑤ 기타 ()

1-3. 1번 문항에서 ②「BTL 민간투자 사업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긍정적, 부정적 한곳 만 응답)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① 정부 재정 부담의 축소	① 중소기업 물량 축소
② 연기금의 활용	② 중소기업 참여 불리
③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③ 수익성 저하
④ 신규 건설시장 출현	④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⑤ 기타 ()	⑤ 기타 ()

1-4. 1번 문항에서 ③「직접 시공의무화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긍정적, 부정적 한곳 만 응답)

긍정적(매우 긍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판단하는 이유
① 부실업체 퇴출	① 공사비 증가
② 건설공사 품질 제고	② 경비의 증가
③ 위장 직영 억제	③ 현장 감독시 부조리 발생
④ 성실업체 성장 촉진	④ 인력 확보의 어려움
⑤ 불법하도급 근절	⑤ 기타

2. 귀사의 직접 시공 비율은? (금액, 2008년 기준)

- ① 20% 이내 ② 20% 이상 40% 미만 ③ 40% 이상 60% 미만
④ 60% 이상 80% 미만 ⑤ 80% 이상

3.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등급별입찰공사 등이 귀사의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금액, 2008년 기준)

구 분	연간 공사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① 지역제한입찰공사	%
②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
③ 조달청등급별입찰공사	%

4. 공사시행에 있어 귀사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우대하여 시공에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금액, 2008년 기준)

- ① 20% 이내 ② 20% 이상 30% 미만 ③ 30% 이상 40% 미만
④ 40% 이상 60% 미만 ⑤ 60% 이상

5. 지역제한 입찰제도 (종합공사는 50억원 또는 7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또는 6억원)에 대한 귀사의 평가는?

- ① 지역 중소기업 물량의 근간으로 물량 확대 필요 ☞ 5-1번으로
② 현행 제도의 유지가 적절함
③ 제한기준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시행한다
④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한다
⑤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⑥ 제한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⑦ 기타 ()

5-1. 지역 제한 입찰 공사 물량 확대 방안은?

- ①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확대 ② 지방정부의 예산 배정 확대
③ 정부(특히, 중앙 정부)의 BTL 발주 물량의 축소
④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규모의 공사의 분할 발주
⑤ 기타 ()

6. 정부는 2006년부터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후 확대 적용하고 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귀사의 평가는?

- ① 찬성 ☞ (6-1번으로) ② 반대 ☞ (6-2번으로) ③ 의견 없음

6-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 ① 건설업체의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②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
- ③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④ 기타 (_____)

6-2.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 ① 중견설업체 이익률 저하 ②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로 부실공사 우려
- ③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활동 저해 ④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 증대
- ⑤ 기타 (_____)

7. 현행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귀사의 평가는?

- ① 운찰제이므로 폐지가 타당 ② 가장 적절한 시공업체 선정에 기여하므로 존속 필요
- ③ 기타 (_____)

7-1. 적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시행한다 ②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한다
- ③ 적격심사 기준상 내용을 조정한다 ④ 다른 입찰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 ⑤ 기타 (_____)

8. 등급별 입찰제도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급별 등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급별 입찰제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 ① 이전에 비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
- ② 취지는 좋으나 개선필요. 등급이 더욱 증가해야 함 ☞ 8-1번으로
- ③ 시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8-1번으로
- ④ 하위업체가 상위업체와 공동등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문제점도 상존
- ⑤ 기타 (_____)

8-1. 8항에서 ② 또는 ③번으로 답한 경우 등급별 입찰제도의 문제점은?

- ① 시행여건의 문제 :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역할분담미비
- ② 등급별 심사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Guide Line의 미비
- ③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미비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 및 기준의 선정
- ⑤ 기타 (_____)

9. 지역의무 공동등급제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지역의무 공동등급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일정 금액(국가기관공사는 50억원,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25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형공동등급 제도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자로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달시공하는 제도입니다.

- 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더욱 하향조정해야 한다
- ② 현행제도가 적정하다 ③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건설업 업역분리 관련 제도

1. 귀사는 계열회사 등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종과 종합건설업종을 겸업하고(겸업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겸업하고 있다 ☞ 1-1번으로
- ② 겸업한 적이 있다 ③ 겸업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한 적도 없다.

1-1. 중복 보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공사 발주물량이 적고,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해서
- ②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복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 ③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전문건설업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 ④ 건설공사 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 현행 건산법상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건설산업 구조 개편 ② 대·중·소 건설업체 균형발전
- ③ 부실 건설업체 퇴출 ④ 업역 확대에 의한 수익 증대
- ⑤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⑥ 기타 (_____)

3. 건설업역 겸업제한 철폐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의 심화 ② 업종별 전문화 불가능
 ③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저하 ④ 하도급업체 전략
 ⑤ 수익의 감소 ⑥ 기타 (_____)

4.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설산업의 양극화란 '건설업체간 수주격차가 심화되어서 극단적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수주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아주적다
2. 각 분야별로 양극화가 심각한 순서대로 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건설업체간 수주격차 ② 건설업체간 임금격차
 ③ 건설업체간 수익격차 ④ 건설업체간 기술격차
3. 건설업체내에 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② 종합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③ 전문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4. 각 원인으로 건설산업 양극화에 끼치는 영향이 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기술력 차이 ② 영업력 차이 ③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하락해서
 ④ 저가하도급 때문에 ⑤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⑥ 기타 (_____)

5. 건설산업 양극화가 발생하면 건설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심각한 문제 순으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② 건설업체간 갈등 초래
 ③ 건설업체간 성장발전 저해 ④ 기타 (_____)
6. 건설수주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중소건설업체간의 기술력 향상 ② 중소건설업체 수주능력 제고
 ③ 저가투찰 방지 ④ 저가하도급 방지 ⑤ 수주물량 확대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및 방안

건설업체간 상생이란, 종전의 원도급-하도급,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전환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술교류, 경영지원 등 상호 협력 하에 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말합니다.

1.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되고 있다 ⑤ 아주 잘못되고 있다
- 1-1.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형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②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③ 정부의 지원부족
 ④ 관련 제도의 미비 ⑤ 기타 (_____)
2. 종합건설업체의 내부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되고 있다 ⑤ 아주 잘못되고 있다
3.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또는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 ② 공사규모별 시장 배분 ③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④ 종합(또는 대형)은 CM, 전문(또는 중소)은 시공의 역할 분담
 ⑤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 사업권 부여 배려

4.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 ()
- ①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의 강화 ② 대중소 건설업체의 성과공유제의 확립
 ③ 대중소 건설업체간 기술협력 강화 ④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⑤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⑦ 중소건설 업체 경영지원 ⑦ 기타 (_____)

5. 건설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력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간의 자율적이고 유기적 분업체계 형성유도
 ②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③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착
 ④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독체계 확립 ⑤ 하도급 관련 제도 강화
 ⑥ 기타 (_____)

6.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파트너형 공사방식 활성화 방안(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에 대한 평가는?
- ① 상생에 기여하는 바가 큼 ② 상생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 6-1번으로 ③ 모르겠음

- 6-1. 6에서 ②로 응답한 이유는? (주관식)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대전광역시 역할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

1. 부실업체 난립에 의한 덩핑수주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② 입찰자격 조건 강화
 ③ 건설산업정보 DB등에 의한 기업 정보 공개 확대 ④ 최저가격 낙찰제도 확대
 ⑤ 기타 (_____)

2.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강화 ☞ 2-1번으로 ②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완화 ☞ 2-1번으로
 ③ 현재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1. 등록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본금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② 기술자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③ 사무실 기준의 대폭 강화 또는 완화 ④ 4대 보험 완납 등 추가적인 기준 수립
 ⑤ 기타 (_____)

3. 등록기준 등 각종 불공정·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바람이 있다면?
- ① 상황·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완화 ②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처분 강화
 ③ 현행 수준이 적정

4. 2008년 대전광역시에서는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관련제도(도시재생사 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공사비 상향조정,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및 공동도급 시행, 대형공 사의 지역협력업체 등록 지원, 찾아가는 현장지도, 등록기준에 의한 부실업체 진입 및 활동 제한, 건설관련 각종 정보제공, 우수건설업체 표창 등)를 실시하였습니다. 귀사는 대전광역 시의 시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별 도움이 되지 않음
 ③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음 ④ 매우 도움이 되고 있음

4-1. 대전광역시의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정관련 사항 중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에 순위 기재 요망)

대전광역시 행정지원 사항	평가순위
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②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종합건설 10억원→50억원이상, 전문건설 6억원이상)	
③ 대형공사의 분할발주·공동도급시행·지역협력업체 등록지원	
④ 정기 지역업체 참여실태조사 등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 진입 및 활동 제한 등 건설업체 관리	
⑥ 건설관련 각종 정보 제공	
⑦ 우수 건설업체 표창 및 자치구 평가	
⑧ 기타 (_____)	

5. 대전광역시외의 향후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 사항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효율적인 업체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육성 관리, 건설업체와 소통창구 운영, 지역건설자재 전시회 개최, 공사용자재 관급설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 활성화 협의회 실무팀 운영)
- ② 제도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 (지방자치단체 공사분할계약 확대, 건설공사품질수수료 면제, 시민홍보 철저로 참여분위기 확산)
- ③ 공공사업 단계별 참여 (계획·예산편성·설계(용역)시, 발주·계약·착공시, 공공사업 진행중, 국가기관 등 지역업체 참여 노력)
- ④ 민간사업 단계별 참여 (심의(협의)시, 인·허가시, 착공 신고시, 민간사업 진행중)
- ⑤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력 강화 (각종 사업 용적률 추가 부여, 건설관련 각종 정보 제공, 우수·하도급 건설업체 표창,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⑥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 (지역업체 참여실태 조사(평가),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실태 조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자치구 평가)
- ⑦ 상생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건설단체협의회 활성화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토론회, 대형건설사에 지역협력업체 등록지원)

6.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적 우선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1순위 :) (2순위 :)

- ① 건설규제 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②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 ③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 ⑦ 기타 (_____)

6-1.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록기준 중복 인정)
- ②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 완화 (명칭사용규제 폐지 및 대표자격 규제, 겸업금지 규제 완화)
- ③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 확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건설보증시장 개방)
- ④ 기타 (_____)

6-2. 현행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 (턴키 대상공사 확대, 턴키 설계 보상비 현실화, 실시설계·시공 일괄방식 도입, 새로운 발주방식 검토 등)
- ②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상설심의위원회 설치, 시범사업 실시)
- ③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PQ변별력 강화, PQ심사 자율권 부여,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최저낙찰제 심사방식 개선, 저가낙찰공사 보증심사 강화)
- ④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발주자 역량진단 모델 및 사업관리방식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공사 사후평가방식 체계화)
- ⑤ 기타 (_____)

6-3.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방식 개선 (적격심사방식 개선)
- ② 설계기준·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지방서 체계를 성능중심으로 개선, 설계비 지급방식을 합리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 ③ 건설엔지니어링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엔지니어링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해외진출국 지원체계 강화)
- ④ 기타 (_____)

6-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상생협업체 운영 활성화)
- ②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포괄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부당특약 제제규정 신설, 건설산업정보와 보증계약정보 연계)
- ③ 상습·중복 위법사항 처벌실효성 제고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강화)
- ④ 기타 (_____)

7. 대전광역시나 건설업 지원기관(단체)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건설업체 대상

--	--	--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정책 연구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및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조사 결과 및 자료는 실태 파악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 8.

대전발전연구원장 육 동 일

조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연 락 처 : 연구위원 김기희 (☎042-530-3519), FAX 042-530-3535

면접원 정 보	이 름	연 락 처	검증원 정 보	이 름	검증결과(○,×)

▷ 일반 사항 ◁

회사소재지	대전광역시 (구)	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	(억원)
상시 직원수	(명)	기업형태	법인 (), 개인 ()
회사설립연도	(년)		
수주액	2007년 (억원),	2008년 (억원)	

경영 상태 및 건설경기 전망 관련

1. 현재 귀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5년 전(2004년), 1년 전(2008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경영상태	① 대폭 개선	② 개선	③ 변화 없음	④ 악화	⑤ 대폭 악화
5년 전(2004년)과 비교					
1년 전(2008년)과 비교					

1-1. (①대폭개선, ②개선으로 응답한 경우) 경영상태가 개선된 가장 큰 이유를 5년 전(2004년), 1년 전(2008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폭 개선 또는 개선된 이유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①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증가		
② 중소기업보호제도에 의한 공사물량 증가		
③ 경영개선 노력 (전략수립,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④ 중점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⑤ 기타 ()		

1-2. (④대폭악화, ⑤악화로 응답한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된 가장 큰 이유를 5년 전(2004년), 1년 전(2008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폭 개선 또는 개선된 이유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①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② 공사물량감소		
③ 경영 개선 노력의 부족		
④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 상승		
⑤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⑥ 기타 ()		

2. (2009년 기준) 매출액을 5년 전(2004년), 1년 전(2008년)과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출액의 변화	20%이상 증가	10~29% 증가	6~9% 증가	±5%	6~9% 감소	10~19% 감소	20%이상 감소
5년 전(2004년)과 비교							
1년 전(2008년)과 비교							

3. 전년도에 비하여 자금사정은 어떠하십니까?

- ① 크게 개선 ☞ 3-1번으로 ② 조금 개선 ☞ 3-1번으로
③ 비슷하다 ④ 조금 악화 ☞ 3-2번으로 ⑤ 크게 악화 ☞ 3-2번으로

3-1. 3문항 중 ①, ②의 경우 자금사정이 개선된 주요 원인은?

- ① 지역 건설활성화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② 경영개선노력(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③ 사업다각화 추진 ④ 기타(_____)

3-2. 3문항 중 ④, ⑤의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 ① 대출곤란 ② 어음할인 곤란 ③ 수주감소
④ 대금 지급지연 ⑤ 원도급자의 부도 ⑥ 기 타 (_____)

4. 최근 자금악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권의 대출 확대 환경조성 ② 공제조합의 어음할인 확대
③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비율 상향조정 ④ 어음 결제기간의 단축
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시행 ⑥ 기 타(_____)

5. 향후 건설경기의 전망을 2년 미만(단기), 3년 이후(중장기)로 구분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건설 경기 전망	① 매우 낙관적	② 낙관적	③ 변화 없음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2년 미만 단기					
3년 이후 중장기					

5-1. (①매우 낙관적, ②낙관적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 낙관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2년 미만	3년 이후
① 신건설 수요의 창출을 통한 물량 증가		
②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지역공사 물량의 증가		
③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강화로 인한 물량 증가		
④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망		
⑤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편		
⑥ 기타 (_____)		

5-2. (⑤매우 부정적, ④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우 부정적,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2년 미만	3년 이후
①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 난망		
②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공사 물량 축소		
③ 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④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		
⑤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저조		
⑥ 기타 (_____)		

6. 향후 귀사의 경영상태 전망을 2년 미만(단기), 3년 이후(중장기)별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건설 경기 전망	① 대폭 개선	② 개선	③ 변화 없음	④ 악화	⑤ 대폭 악화
2년 미만 단기					
3년 이후 중장기					

6-1. (①대폭 개선, ②개선으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개선(대폭 개선 포함)으로 전망하는 이유	2년 미만	3년 이후
①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		
② 중점 사업 분야의 전환 및 사업다각화 추진		
③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 개선		
④ 공사 물량의 증가		
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회복 및 활성화		
⑥ 중소 건설업 보호제도의 증가		
⑦ 기타 (_____)		

6-2. (⑤대폭 악화, ④악화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악화(대폭 악화 포함)로 전망하는 이유	2년 미만	3년 이후
①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②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퇴조로 공사 물량 확보 감소		
③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이 요원함		
④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		
⑤ 원가(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		
⑥ 기타 ()		

7.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로 각각 1가지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경영애로사항	순위	경영애로 극복 과제	순위	경영애로 극복 정책 및 제도	순위
①인재 확보의 어려움		①영업력 강화		①경영컨설팅 지원	
②공사 물량의 부족		②인재 육성		②지자체 발주 물량의 증대	
③금융지원 제도의 미비		③사업다각화 추진		③중소건설업 보호제도를 통한 공사물량 확보	
④기술개발의 여건 미비		④경비 절감		④새로운 금융지원제도 도입	
⑤경쟁의 심화		⑤신기술·신공법개발		⑤건설관련 규제의 철폐	
⑥원가 상승		⑥인력 구조 조정		⑥신규 기술개발 제도 도입	
⑦공사관련 민원의 증가		⑦중점사업분야 변경		⑦건설업 진입 장벽 강화	
⑧비효율적 건설관련 규제		⑧기타 ()		⑧국가·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적극 시행	
⑨국가·지역경제의 침체				⑨건설공사 민원 해결	
⑩기타 ()				⑩기타 ()	

건설업 제도개선 관련

1. 현행(국가공사 7억, 지방공사 7억) 지역제한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제도가 좋다 ② 제한기준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시행한다
 ③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한기준을 차등화하여 시행한다
 ④ 제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⑤ 제한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⑥ 기타 ()

2. 10억 미만 공사의 낙찰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90%이상 ② 88%이상 ③ 85%이상
 ④ 82%이상 ⑤ 82%미만 ⑥ 기타 ()

3. 적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시행한다 ②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한다 ③ 적격심사 기준내용을 조정한다
 ④ 다른 입찰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⑤ 기타 ()

4.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③ 입찰시 하도급할 자와 하도급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④ 저가하도급심사제도 ⑤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⑥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 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자로서 각 공종별전문공사를 전담 시공하는 제도임

- ① 종합과 전문건설사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하는 구성방식의 문제 및 혼선을 극복 하기 위한 구성방식의 명확한 규정
 ② 계약이행, 시공책임, 하자보수 등의 명확한 구분
 ③ 구성원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의 보장
 ④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관리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⑤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사업영역이 대형전문건설업체로 옮겨가는데 따른 제도의 보완
 ⑥ 기타 ()

6. 귀사는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종과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하고(보유한 경향이) 있습니까?

- ① 중복 보유하고 있다 ☞ 6-1번으로
 ② 중복 보유한 적이 있다 ③ 중복 보유하고 있지 않다

6-1. 6번 문항에서 중복 보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공사 발주물량이 적고,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해서
- ②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복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 ③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전문건설업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 ④ 건설공사 시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⑤ 기타 (_____)

7. 개편된 생산체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원도급자 입찰시 하도급 할 공종과 하도급자 및 하도급금액을 명시한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산체계 개편 전에 전문건설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복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④ 현재 전문건설업종에 의한 시공실적을 새로운 건설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 ⑤ 전문건설업자가 새로운 건설업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수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도급 거래

1. 귀사는 하도급공사 입찰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① 최저가 견적금액으로
- ② 원도급사의 요구로 실견적보다 일정비율을 낮추어서
- ③ 원도급사의 실행예산에 맞추어서
- ④ 경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 ⑤ 기타 (_____)

2. 귀사의 가장 많은 하도급공사 수주방법은?

- ① 연고자를 통한 수주
- ② 일반경쟁 입찰(서류제출)
- ③ 특수공법, 장비를 보유하여 독점수주
- ④ 협력업체 등록에 의한 수주

3. 귀사는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가격 대비, 대체로 평균 몇 %수준으로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까?

- ① 공공공사 (%)
- ② 민간공사 (%)

4. 실행가격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은?

- ①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고정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 ② 경쟁자가 많아
- ③ 연고권 확보를 위하여
- ④ 원도급자의 강요
- ⑤ 만기 도래하는 어음상환을 위하여

5. 현재 귀사는 대형종합건설업체와 거래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복수응답가능) () ()

- ① 하도급계약 시 불공정 조항 강요
- ② 하도급금액 부당감액
- ③ 추가공사비 미반영
- ④ 하도급대금 미지급·지불유보
- ⑤ 과도한 어음결제 비중
- ⑥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 ⑦ 하도급물량의 급격한 축소
- ⑧ 어음할인료 미지급
- ⑨ 커미션·접대 요구
- ⑩ 기타 (_____)

6.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해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계약조항(특약사항 포함)을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 ① 있었다 ☞ 6-1번으로
- ② 없었다

6-1. 6문항 중 ① 불공정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한 경우(특약사항)가 있었다면 그 관련사항과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

- ① 물가변동(상승)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 ②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발생 시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
- ③ 민원발생시 하도급자 처리부담으로 하는 일방적 조항 신설
- ④ 4대 보험료(고용, 산태, 국민연금, 건강보험)를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는 일방적 조항 신설

7.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경우가 있었다면?

- ①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보여줌
- ② 대금 결제조건의 우대약속
- ③ 추후공사시 지속적인 공사발주의 약속
- ④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

8. 원도급자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례는?

- ① 간혹 있었다 ☞ 8-1번으로
- ② 빈번하게 있었다 ☞ 8-1번으로
- ③ 없었다

8-1. 8문항 중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다면 전체 하도급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 ① 10%미만
- ② 10~30%미만
- ③ 30~50%미만
- ④ 50~70%미만
- ⑤ 70%이상

9. 이중계약의 경험이 있었다면, 이중계약으로 위장한 내용은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① 하도급계약 금액 ② 계약 당사자 명의 ③ 하도급계약서상 일반적 조항
 ④ 기타 (_____)

10. 이중계약의 경험이 있었다면, 실제 하도급계약 금액과 위장계약 금액의 차액은 실제 하도급계약 금액의 평균 몇 %정도 인니까? (%)

11.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귀사도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 받고 있습니까?
 ① 받는 편이다 ② 제대로 못받고 있다
 ③ 원도급자가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받지 못하는 편이다
 ④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자체를 모른다

12. 하도급 공사대금 수령 비율은?
 ① 현금 (%) ② 어음 (%)

13.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만기일은?
 ① 30일 이하 ② 31~60일 ③ 91~120일 ④ 121~150일 ⑤ 151일 이상

14. 귀사는 하도급대금 수령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법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하여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상-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기타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① 대부분 지급 받는다 ② 가끔 받는다 ③ 받은 적이 없다

15. 귀사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1. 15문항 중 ① 대물로 수령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① 원도급자와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② 원도급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③ 발주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어서
 ④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청구
 ⑤ 기타 (_____)

16.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 공사에도 적용 받았습니까?

① 거의 받았다 ② 가끔 받았다 ③ 받은 적이 없다
 ④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금액 조정사실에 대한 통보를 못 받는다

17. 추후공사 후 원도급업자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18.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19.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감액을 당하였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

- ①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 ②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 ③ 원도급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
- ④ 목적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도급업자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
- ⑤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 ⑥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 ⑦ 원도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하도급자에게 전가
- ⑧ 기타 (_____)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설산업의 양극화란 '건설업체간 수주격차가 심화되어서 극단적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수주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아주적다
2. 각 분야별로 양극화가 심각한 순서대로 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건설업체간 수주격차 ② 건설업체간 임금격차
 ③ 건설업체간 수익격차 ④ 건설업체간 기술격차
3. 건설업체내에 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② 종합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③ 전문 건설업체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
4. 각 원인별로 건설산업 양극화에 끼치는 영향이 큰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기술력 차이 ② 영업력 차이 ③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하락해서
 ④ 저가하도급 때문에 ⑤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⑥ 기타 (_____)
5. 건설산업 양극화가 발생하면 건설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심각한 문제 순으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② 건설업체간 갈등 초래
 ③ 건설업체간 성장발전 저해 ④ 기타 (_____)
6. 건설수주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중소건설업체간의 기술력 향상 ② 중소건설업체 수주능력 제고
 ③ 저가투찰 방지 ④ 저가하도급 방지 ⑤ 수주물량 확대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및 방안

건설업체간 상생이란, 종전의 원도급-하도급,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전환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술교류, 경영지원 등 상호 협력 하에 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말합니다.

1.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되고 있다 ⑤ 아주 잘못되고 있다 ⑥ 1-1번으로 ⑦ 1-1번으로
- 1-1.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형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②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③ 정부의 지원부족
 ④ 관련 제도의 미비 ⑤ 기타 (_____)
2.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또는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 ② 공사규모별 시장 배분 ③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④ 종합(또는 대형)은 CM, 전문(또는 중소)은 시공의 역할 분담
 ⑤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 사업권 부여 배려
3.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 ()
 ①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의 강화 ② 대중소 건설업체의 성과공유제의 확립
 ③ 대중소 건설업체간 기술협력 강화 ④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⑤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⑦ 중소건설 업체 경영지원 ⑦ 기타 (_____)
4. 건설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력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간의 자율적이고 유기적 분업체계 형성유도
 ②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③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착
 ④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독체계 확립 ⑤ 하도급 관련 제도 강화
 ⑥ 기타 (_____)

⑦ 기타 (_____)

6-1.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 촉진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록기준 중복 인정)
- ②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 완화 (명칭사용규제 폐지 및 대표자격 규제, 겸업금지 규제 완화)
- ③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계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 확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건설보증시장 개방)
- ④ 기타 (_____)

6-2. 현행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 (턴키 대상공사 확대, 턴키 설계 보상비 현실화, 실시설계·시공 일괄방식 도입, 새로운 발주방식제 검토 등)
- ②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상설심의위원회 설치, 시범사업 실시)
- ③ 입찰·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PQ변별력 강화, PQ심사 자율권 부여,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최저낙찰제 심사방식 개선, 저가낙찰공사 보증심사 강화)
- ④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발주자 역량진단 모델 및 사업관리방식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공사 사후평가방식 체계화)
- ⑤ 기타 (_____)

6-3.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설계·엔지니어링 입찰 방식 개선 (적격심사방식 개선)
- ② 설계기준·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방서 체계를 성능중심으로 개선, 설계비 지급방식을 합리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 ③ 건설엔지니어링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엔지니어링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해외진출국 지원체계 강화)
- ④ 기타 (_____)

6-4.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상생협업체 운영 활성화)
- ②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포괄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부당특약 제제규정 실설, 건설산업정보와 보증계약정보 연계)

③ 상습·중복 위법사항 처벌실효성 제고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강화)

④ 기타 (_____)

7. 대전광역시나 건설업 지원기관(단체)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2009-04

대전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발행인 유 병 로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